

2019 아름다운재단 캠페인 '열여덟 어른'

##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토론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민간의 역할모색



designed by 전인수

일시 | 2019년 10월 29일(화) 14:00~16:30

장소 | 청어람홀(낙원상가 5층)

주최 |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 목차

|                      |          |
|----------------------|----------|
| <b>1. 진행순서</b> ..... | <b>4</b> |
|----------------------|----------|

## **2. 발제문**

### **발제1.**

|   |          |
|---|----------|
| <b>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지원 실태 및 민간지원 필요성</b> ..... | <b>5</b> |
|---|----------|

전현경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전문위원

### **발제2.**

|   |           |
|---|-----------|
| <b>아름다운재단 보호종료아동 대상 지원사업의 전개 및 작은변화</b> ..... | <b>44</b> |
|---|-----------|

권연재 아름다운재단 협력사업팀장

## **3. 토론문**

|                               |           |
|-------------------------------|-----------|
| <b>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b> ..... | <b>80</b> |
|-------------------------------|-----------|

## 토론회 진행순서

| 시간     | 내용  | 발표자                  |
|--------|---|----------------------|
| 14:00- | 환영사   | 권찬<br>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
| 14:15- | 발제1.<br>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 지원 실태 및<br>민간 지원 필요성   | 전현경<br>아름다운재단 전문위원   |
| 14:35- | 발제2.<br>아름다운재단의 자립 지원 현황과 성과  | 권연재<br>아름다운재단 협력사업팀장 |
| 14:55- | 토론<br>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민간 지원<br>- 좌장 : 한태윤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장)<br>- 토론자:<br>.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br>. 신선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이너)<br>. 이경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자립국 국장)<br>.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br>.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br>질의응답 |                      |
| 16:25- | 정리 및 폐회   |                      |

## | 발제문 1

#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지원 실태 및 민간지원 필요성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전문위원 전현경

## I. 들어가며

2000년, 아름다운재단의 첫 기금기부자인 김군자 할머니는 "내가 고아로 자라며 야학을 8개월 다닌 것이 평생 배움의 전부이다. 부모가 없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사용해 주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아름다운재단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당시 만18세가 되면 정부정착금 200만원으로 자립해야 하는 시설퇴소 아동의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동참하는 기업과 개인 기부자들이 늘어나면서 사업도 확대되어왔다. 보육시설에서 그룹홈으로, 대학등록금에서 자기개발비, 주거비로 2019년까지 830명의 보호종료 청소년 등에게 누적금액 약 40억원이 지원되었다.

보호종료 청소년의 실태조사나 자립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고, 정부지원금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주거지원이나 학자금 지원 등도 늘어나고 있다. 2018년 5월 성년의 날을 맞아 청와대에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멘토선배인 '바람개비 서포터즈'를 초청하여 당사자그룹의 경험과 의견을 청취했다. 2019년에는 '자립수당'도 신설되고, 그간 제기된 제도적 약점을 보완하는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도 여야의원들의 고른 지지를 받으며 국회에 상정되었다.

그간 주장해 온 제도적 지원이 한 단계 추진되는 이 시점에서 비영리민간지원기관으로서 아름다운재단은 현재까지의 흐름을 짚어보고, 단기/중기/장기적으로 민간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매우 반가운 일이나, 아름다운재단이 만나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을 통해 법의 의도가 그대로 현실이 되지 못한다는 것, 개인의 자립이 법제도의 지원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의 기반이 되는 전제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보호종료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이해하고, 관련된 아젠다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아름다운재단은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장기적 전망 하에 상호 시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정책입안자인 국회, 수행자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지원단, 관련 지원을 하는 민간기구들,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의 추진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의 시설퇴소 및 위탁종료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보고서,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조사결과를 포함한 아동자립지원단의 "2016 자립지원포럼-보호종결아동,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다"자료집과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자료집, 국회입법조사처의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광주광역시 "시설퇴소 청년 자립기반 지원방안 연구" 검토를 통해 기본 자료와 정책과제를 정리하였다. 이에 더하여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담당자, 아동자립지원단, 자립당사자, 청소년 자립프로젝트 '자몽' 담당자, 지역아동센터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자립홈을 구상 중인 센터장님 등을 인터뷰했다. 인터뷰를 통해 보호종료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짚어보고자 한다. 한겨레 21 제1255호의 커버스토리에도 큰 도움을 받았음을 미리 밝힌다.

## II. 보호종료아동 현황

### 1.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청소년 일반현황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서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생인구수가 줄어들어 따라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보호대상아동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신규발생 보호대상아동은 3,918명이다.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중 '학대'가 36.1%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부모의 이혼'(18.8%), '미혼부모, 혼외자'(15.9%)이다. 이는 향후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에서 '원가족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는 입양, 가정위탁, 시설입소로 나뉜다. 가정위탁은 조부모(대리양육)나 친인척, 혹은 다른 가정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며 보호하는 것이다. 시설입소는 쉼터 등(일시보호시설), 양육시설, 장애아동시설, 그룹홈 등의 보호를 말한다. 2018

년 신규 발생된 보호대상아동 3,918명의 보호조치는 다음과 같다.

| 발생인원   | 유기  | 미혼부모, 혼외자 | 미아  | 비행/가출/부랑 | 학대    | 부모빈곤/실직 | 부모사망/질병 | 부모이혼 | 계     |
|--------|-----|-----------|-----|----------|-------|---------|---------|------|-------|
| 수(명)   | 320 | 623       | 18  | 231      | 1,415 | 198     | 376     | 737  | 3,918 |
| 비율 (%) | 8.2 | 15.9      | 0.5 | 5.9      | 36.1  | 5.1     | 9.6     | 18.8 | 100.0 |

표 1. 2018년 신규발생 보호대상아동 (출처:국가통계포털)

|       | 시설입소  |        |      |      |      | 가정보호  |      |     |       |      |
|-------|-------|--------|------|------|------|-------|------|-----|-------|------|
|       | 계     | 양육시설 등 | 일시보호 | 장애시설 | 그룹홈  | 계     | 소년소녀 | 입양  | 입양전위탁 | 가정위탁 |
| 수(명)  | 2,449 | 1,300  | 484  | 7    | 648  | 1,469 | 1    | 174 | 357   | 937  |
| 비율(%) | 62.5  | 33.2   | 12.4 | 0.2  | 16.5 | 37.5  | 0.0  | 4.4 | 9.1   | 23.9 |

표 2. 2018 신규발생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출처:국가통계포털)

2018년 기준, 입양이나 일시보호 등을 제외하고 가정위탁, 양육시설, 그룹홈에서 보호되는 아동은 총 22,927명이다. 아동양육시설 보호 비율이 48.4%로 가장 높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가정보호와 대리양육을 할 때에는 가정형 보호를 강조한 바 있으나 여전히 대규모시설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양육시설당 평균수용인원이 46명, 그룹홈이 5명, 가정위탁이 1명이다. 가정형 보호를 기준으로 보자면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로 우선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동 1인당 지원 단가는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의 순이다.

| 구분    | 가정위탁   |      |      |      | 아동양육시설        | 그룹홈          | 계      |
|-------|--------|------|------|------|---------------|--------------|--------|
|       | 소계     | 대리양육 | 친인척  | 일반위탁 |               |              |        |
| 수(명)  | 11,141 | 7426 | 2801 | 914  | <b>11,100</b> | <b>2,872</b> | 25,113 |
| 비율(%) | 44.4   | 29.6 | 11.2 | 3.6  | 44.2          | 11.4         | 100.0  |

표 3. 2018 아동보호현황

(출처: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현황, 공동생활가정현황 / 국가통계포털 가정위탁현황)

\* 일반가정위탁 :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

대리양육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            |             |            |
|-------------------|------------|-------------|------------|
|                   | 가정위탁       | 아동양육시설      | 그룹홈        |
| 시설수(개)            | 8,955      | 241         | 558        |
| 보호아동수(명)          | 11,141     | 11,100      | 2872       |
| <b>시설당 아동수(명)</b> | <b>1.2</b> | <b>46.1</b> | <b>5.1</b> |

표 4. 2018년 기준 보호유형별 시설당 평균아동 수

2018년에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은 2,606명이다. 만기퇴소는 만18세가 되어 퇴소하는 것이고, 연장종료는 만 18세 이후에 대학 이하의 학업완수, 직업교육이수, 병이나 그외 사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정위탁은 52.0%로 연장종료의 비율이 높았고 양육 시설과 공동생활은 만기퇴소가 높았다.

|      |              |              |                     |
|------|--------------|--------------|---------------------|
|      | 만기퇴소(명/%)    | 연장종료(명/%)    | 총계(명/%)             |
| 양육시설 | 754(70.8)    | 311(29.2)    | 1,065(100.0)        |
| 공동생활 | 157(81.8)    | 35(18.2)     | 192(100.0)          |
| 가정위탁 | 647(48.0)    | 702(52.0)    | 1,349(100.0)        |
| 합계   | 1,558(100.0) | 1,048(100.0) | <b>2,606(100.0)</b> |

표 5. 2018년 보호종료청소년 현황 (출처:2018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

18세 이전에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 원가정복귀가 가장 높지만 기타로 명기되지 않은 이유도 적지 않다. 중간보호종료, 즉 중간에 퇴소한 경우 재입소가 불가능하다. 자칫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중간보호종료자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      |           |            |         |             |           |          |            |
|------|-----------|------------|---------|-------------|-----------|----------|------------|
|      | 원가정복귀     | 가정위탁/친인척인계 | 취업      | 무단퇴소/사망/군입대 | 전원        | 기타       | 합계         |
| 양육시설 | 87(35.2)  | 8(3.2)     | 19(7.7) | 7(2.8)      | 79(32.0)  | 47(19.0) | 247(100.0) |
| 공동생활 | 49(50.5)  | 6(6.2)     | 4(4.1)  | 2(2.1)      | 25(25.8)  | 12(12.4) | 97(100.0)  |
| 합계   | 136(39.5) | 14(4.1)    | 11(3.2) | 9(2.7)      | 104(30.2) | 59(17.2) | 344(100.0) |

표 6. 2018년 중간보호종료사유현황 (출처:2018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

보호종료 청소년의 경우 25%가 연락두절되었다. 2019년 자립정착금 지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동자립지원단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보호종료 청소년들과의 접점을 이어가기 어렵다. 자립정착금 또한 신청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중간보

호종료와 보호종료 후 연락두절된 청소년의 현황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 종료연도     | 대상자수<br>(명)  | 진학(명)      | 취업(명)        | 군입대(명)    | 기타(명)      | 연락두절(미<br>입력포함) |
|----------|--------------|------------|--------------|-----------|------------|-----------------|
| <b>계</b> | <b>5,129</b> | <b>620</b> | <b>2,424</b> | <b>58</b> | <b>748</b> | <b>1,279</b>    |
| 2013년    | 1,065        | 43         | 475          | 6         | 125        | 416             |
| 2014년    | 1,008        | 70         | 488          | 11        | 150        | 289             |
| 2015년    | 890          | 107        | 480          | 16        | 132        | 245             |
| 2016년    | 1,042        | 185        | 497          | 16        | 168        | 176             |
| 2017년    | 1,034        | 215        | 484          | 9         | 173        | 153             |

표 7.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퇴소자 현황(2018년 5월)  
(출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 2. 보호종료된 청소년의 경제현황

2016년 보호종료 청소년 조사에 따르면 평균 자립지원금은 자립정착금, CDA, 후원금에서 전달되었고 총액은 700만원-1,100만원 선이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제3항은 자립정착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지급금액이나 지급시기가 달라 지역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CDA)는 일반후원자와 자자체가 매칭펀드(최대 4만원 + 4만원)를 하여 퇴소 시 500만원 전후의 후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나마도 후원자가 있을 경우에만 후원계좌를 만들 수 있다.

| 구분     | 자립정착금(만원) | CDA(만원) | 후원금(만원) | 총액(만원)  |
|--------|-----------|---------|---------|---------|
| 가정위탁   | 431.8     | 258.8   | -       | 690.6   |
| 아동양육시설 | 422.2     | 329.8   | 300.7   | 1,052.7 |
| 그룹홈    | 457.1     | 335.5   | 280.7   | 1,073.3 |

표 8. 평균자립정착금 (출처: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조사, 아동자립지원단)

정착금 수령시기는 3개월에서 6개월 이내가 가장 많았다.

| 구분    | 종결전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1년이상       | 계     |
|-------|------|------|-------------|-------------|------------|------------|-------|
| 수(명)  | 132  | 388  | 122         | 98          | 44         | 37         | 821   |
| 비율(%) | 16.1 | 47.3 | <b>14.9</b> | <b>11.9</b> | <b>5.4</b> | <b>4.5</b> | 100.0 |

표 9. 지원금 수령시기 (출처: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조사, 아동자립지원단)

### 3. 보호종료 청소년 진학/취업 현황

2018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종료시점에서 대학진학경험이 있는 비율이 37.8%로 2018년 전체 대학진학률 69.7%에 비해 낮은 편이다.

|      | 고등 이하 | 고등졸업  | 대학(중퇴,재학,휴학) | 대졸  | 기타(미입력) | 총계    |
|------|-------|-------|--------------|-----|---------|-------|
| 양육시설 | 71    | 594   | 275          | 118 | 7       | 1,065 |
| 그룹홈  | 16    | 93    | 65           | 15  | 3       | 192   |
| 가정위탁 | 56    | 762   | 213          | 300 | 18      | 1,349 |
| 계    | 143   | 1,449 | 553          | 433 | 28      | 2,606 |

표 10. 2018년 보호종료 청소년 학력(출처:2018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대학재학 중 등록금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으로 충당하는 비율이 76/2%로 가장 높았고, 생활비는 아르바이트(55.2%)나 시설후원(19.3%), 자립정착금(17.1%)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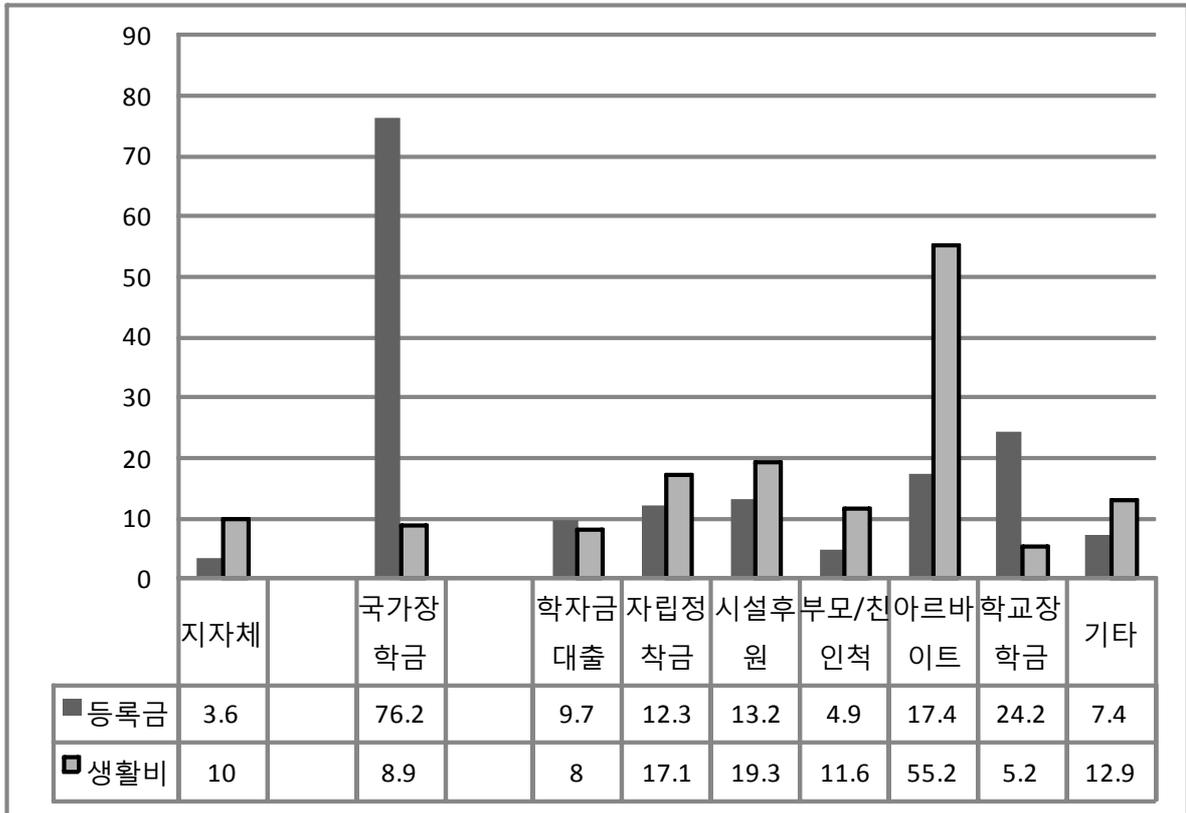


그림 7. 대학재학 중 등록금/생활비 마련방법(중복응답)  
(출처: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조사, 아동자립지원단)

2016년 실태조사 응답자 중 51.1%가 취업중, 48.9%가 취업 준비 중이라 응답했는데, 취업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평균 구직활동기간은 21.6개월이었다. 취업 중인 경우 서비스 종사자(25%)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7.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4.9%)가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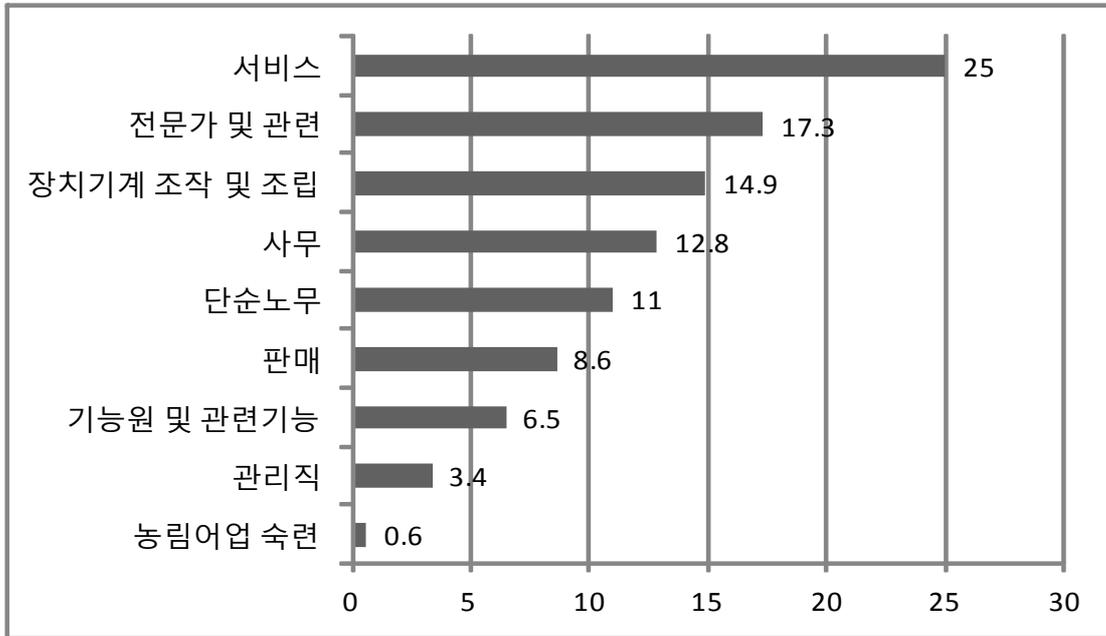


그림 8. 취업자의 직업유형(출처: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조사)

취업자 중 정규직이 72.7%, 비정규직이 27.3%였다. 이들의 평균소득이 123만원으로 2016년 기준 최저임금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의 월평균 지출액은 138만원으로 소득에 비해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다.

#### 4. 주거현황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 주거안정의 수요가 가장 절실하다. 정부지원으로는 LH를 통해 전세주택, 영구임대 등을 지원받는 경우, 자립지원시설 거주, 공동생활가정 거주에 세가지가 있다. 2018년 보호종료 청소년 2,606명 중 주거관련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가 870명(33.4%), 그 외의 경우가 1,736명(66.6%)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두배로 많았다. 양육시설과 그룹홈은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가 50%이상으로 높았고,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소년은 14.2%만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에 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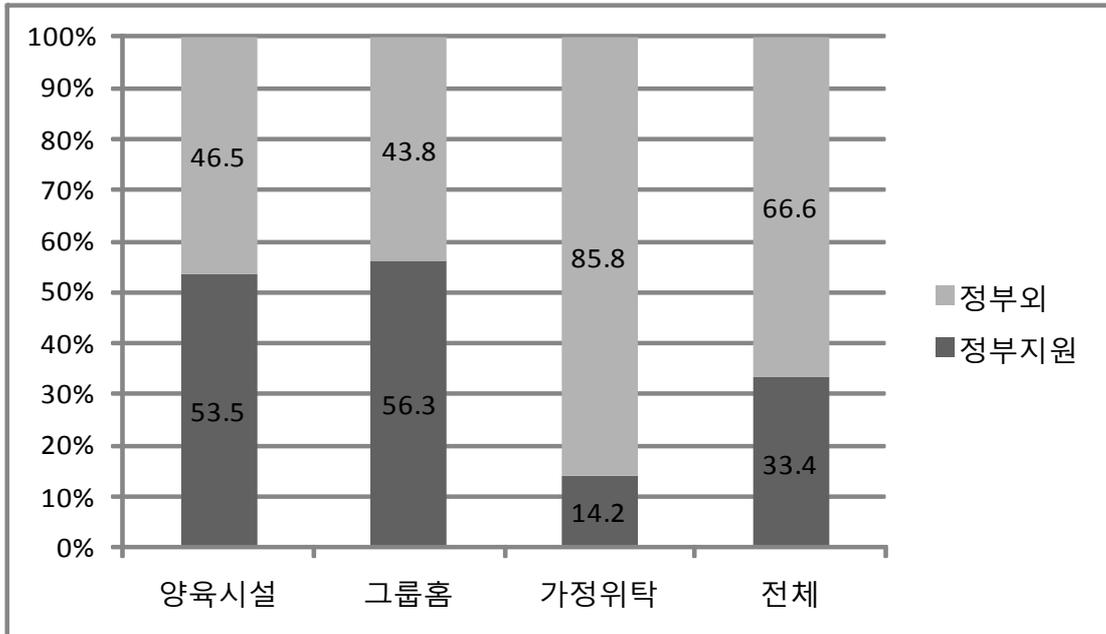


그림 9. 2018년 보호종료청소년 주거현황 (출처:2018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조부모나 친인척이 대부분인 가정위탁은 보호종료 후 위탁가정에 계속 사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양육시설은 기숙사, 그룹홈은 월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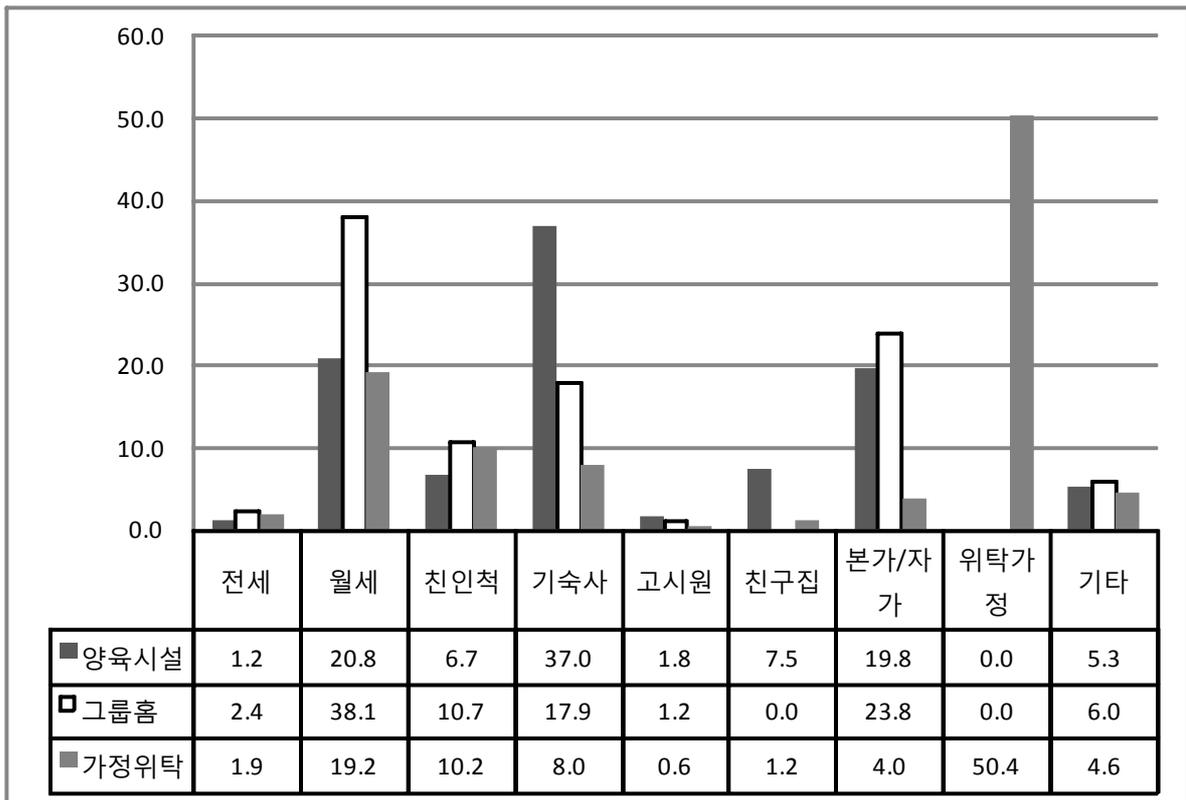


그림 10. 보호유형별 보호종료 후 주거현황비율(출처:2018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 III.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쟁점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지원관련 쟁점을 최근 2년간의 선행연구 자료와 2019년 4월-5월 중 진행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방안"(2018), 윤후덕 의원식/입법조사처에서 개최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자료집(2019), 그리고 광주연구원의 "광주광역시 시설 퇴소 청년 자립기반 지원방안 연구"보고서(2019)를 검토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는 2019년 4월-5월 중 다음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전문분야        | 인터뷰 대상자                        | 일시           | 비고 |
|-------------|--------------------------------|--------------|----|
| 정부자립지원      | 아동자립지원단 이경원 단장, 서혜원 주임, 강유리 주임 | 2019년 4월 11일 |    |
| 대안적 자립지원    | 푸르른지역아동센터 송경호 센터장              | 2019년 4월 4일  |    |
| 학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 2019년 4월 30일 |    |
| 청소년 자립 모니터링 | 함께걷는아이들 유원선 사무국장               | 2019년 4월 9일  |    |

#### 1. 선행연구의 자립지원 제언

국회입법조사처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2018) 보고서는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적절한 지원, 교육·훈련·고용에 대한 기회부여, 경제적 안정성 획득, 주거안정 및 안전의 확보, 건강 및 정서적 건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다음 일곱 개의 입법과제 및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① 보호종료 규정 현실화. 연령을 21세로 일괄 상향시거나 당사자의 요청만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함. 진로변경으로 인한 휴학 및 자퇴, 실업이나 군입대 등으로 보호종료되지 않게 함.
- ② 지원 표준화. 자립정착금 및 대학입학금 등 지급을 중앙정부가 관리하여 지급액과 지급시기 일원화 및 지방정부의 자립전담기구 및 자립전담요원 배치 의무화 및 개인상담사 제도 도입.
- ③ 주거 안정 지원확대. LH주거지원의 연령조건을 완화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월세분

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보증금 보호책 마련.

- ④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및 학업완수 지원방안 마련.
- ⑤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기간 확대, 다양성 확충, 인턴십 기회 제공, 숙박서비스 지원 등.
- ⑥ 건강지원. 건강보험 체납 시 결손처분 및 의료수급권자 전환지원.
- ⑦ 자립지원계획에 대한 시행여부 및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사항 규정. 프로그램 설계에 당사자 참여

2019년 4월, 윤후덕 등 의원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아동자립지원단의 후원으로 개최된 정책 세미나에서 보호종료 청소년 실태조사 자료 및 질적연구 15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로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음의 여섯 가지를 제언하였다.

- ① 자립지원 대상에 대한 실제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를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 구축.
- ② '건강한 의존'으로서의 '자립'지원. 보호아동의 심리적 외상치료와 이동의 원가족에 대한 개입을 병행하여 '건강한 의존'을 할 수 있는 심리적, 환경적 상태를 형성을 도움.
- ③ 다양한 자립지원제도의 접수창구 일원화를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및 표준화된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체계 구축.
- ④ 2019년 4월부터 시작되는 자립수당을 보호종료 직후보다 자립과정 중 필요한 시기에 'Second Chance'로 활용할 수 있게 함.
- ⑤ 자립이행기 도입을 통한 개별적, 단계적 자립지원. 18세 보호종료 후 24세까지 의무 자립지원기간, 29세까지는 신청을 통해 자립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 제공.
- ⑥ 현 자립지원제도의 보완 및 심리정서적 지원 보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현행 지원체계를 검토하고 외국제도 검토를 통해 보호대상 청소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별법은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대상을 아동복지법만이 아니라 시설미성년후견법의 적용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지원하는 내용과 방법 등의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20대 국회에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021662)으로 입법발의되었다.

| 항목        | 내용  |
|-----------|---|
| 목적        | 보호대상 아동이 성인으로서 자기책임 하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자질과 역량을 사회를 이해 환원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의식을 가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법률의 목적임  |
| 적용 대상     | <p>개인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아동은</p> <p>아동복지법만이 아니라 시설미성년후견법상의 보호시설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아동으로서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였거나 부모의 돌봄이 매우 약한 아동</p> <p>지원자격이 있는 아동은</p> <p>15세 이상부터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고,</p> <p>16세부터 18세까지 아동으로 현재 보호시설에서 있거나</p> <p>16세부터 18세까지 아동으로 보호시설을 떠났으나 위 대상아동에 해당되거나</p> <p>18세부터 21세까지로 위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아동</p> <p>지원의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아동</p> <p>위 자격을 갖춘 아동으로서 직업훈련 또는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은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p>   |
| 지원 내용과 기간 | <p>개인별 지원 : 주거, 생계, 교육, 직업, 심리상담, 건강 등 아동이 성인기로 성공적으로 전이할 때까지 개인별 필요에 따른 지원</p> <p>집단적 지원 : 개롭활동, 봉사활동, 취미활동 등 보호대상 아동이 소속감을 갖고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경로로 활용될 수 있는 활동</p> <p>지원기간 : 개인별 지원계획은 원칙적으로 18세부터 21세까지로 하되, 개인별 필요성에 따라 25세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집단별 지원은 활동 유형에 따라 기한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p>   |
| 전달 체계     | <p>개인별 지원은 본인, 보호시설의 장, 친족 등의 신청으로 개시</p> <p>신청 접수 후 개인별 지원자(전담요원 역할변경)를 배정하고,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개인별 지원을 수행함</p> <p>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지방자치단체와 보호대상 아동 간에 수립. 계획수립에는 아동의 개인별 지원자가 아동을 지원하고, 부모, 친족, 보호시설의 장 등이 이해관계인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아동의 행위능력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이 필요)</p> <p>지원계획의 집행:지방자치단체가 집행 책임을 맡음. 개인별(개인별 특성을 살려 지원내용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또는 집단적지원(그룹유형별로 지원)의 집행에 지원전담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함(집단지원 및 상담. 집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p> <p>개인별 지원계획의 점검 : 점검 절차에는 아동 및 개인별 지원자가 참여하도록 함.</p> <p>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한 예산의 확보와 집행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아동지원협의체를 두어 개인별, 집단적 지원계획이 집행될 수 있게 함</p> <p>지원의 효과성 측정 : 아동자립지원단에 의한 효과성 측정 및 발전을 위한 지원</p> |

광주연구원에서 수행한 '광주광역시 시설 퇴소 청년 자립기반 지원방안 연구'(2019)는 광주광역시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 후 10년 이하 청년의 자립실태를 파악하고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동양육시설 퇴소 전·후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제도를 분석하고, 시설 퇴소 후 청년 56명을 면접조사 등을 하였다. 연구결과 다음 열 가지가 제언되었다.

- ① 퇴소 연령을 민법상 성인인 19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자립능력을 평가하여 퇴소하는 맞춤형 자립지원을 실천한다.
- ② 고등학교를 졸업 직후 퇴소하는 방식보다 국가장학금을 활용하여 대학교 진학을 통한 전문직업능력을 키운 후에 퇴소하도록 장려한다.
- ③ 퇴소 청년이 자립지원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낮은 주거비로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하도록 한다.
- ④ PC방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음식·숙박서비스업 종사자, 기능직 등보다는 사회복지사, 교사 등 전문직 취업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도록 한다.
- ⑤ 금융활용 능력을 키워 저축을 늘리고 빚을 줄여 자산형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립을 추구한다.
- ⑥ 아동복지정책의 틀을 단순 보호에서 자립역량 강화로 바꾸도록 정책결정자, 시설장과 자립담당인력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에 역점을 둔다.
- ⑦ 아동양육시설에만 있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을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지원센터에도 배치시켜 아동(청년)의 자립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운다.
- ⑧ 일부 시·도에만 있는 자립지원시설을 모든 시·도에 설치하고, 한국복지보건인력개발원 자립지원사업단의 전달체계로 시·도 자립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 ⑨ 퇴소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다.
- ⑩ 위에서 제안한 내용을 제도화시키기 위해 아동복지법령을 개정하여 퇴소 청년의 자립을 공고히 한다

## 2. 전문가 인터뷰

### 2-1. 현행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필요

아동자립지원단 인터뷰는 현행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사후관리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없었다.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연 1회 자립 수준 평가가 있었지만, 관련 예산투여 없이 자립전담요원이 전화로

물어보는 정도였기 때문에 연락두절율도 높았다. 2019년 자립수당이 시작되어 이전보다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 예상되지만 다음의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 ① 지원내용과 체계가 표준화되어야 한다. 자립정착금의 지원 금액과 시기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지적이 많았고, 당사자들이 유리한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했다. 최근 지역별 지원금액 편차는 없어졌으나 여전히 지원시기가 상이하다. 진학이나 취업 중 기초수급을 신청하거나 주거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담당자에 따라 잘못된 정보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 ② 보호종료 시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별로 제공되는 지원내용이 다르다. 시설퇴소의 경우 원가족에 복귀하더라도 자립정착금이 나오는데, 가정위탁은 자립정착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정위탁은 군입대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호를 임시중지하였다가 다시 이어갈 수 있으나 양육시설은 보호가 종료된다. 그룹홈은 자립관리에 관심이 높지만 그룹홈 협의회가 정부산하가 아니어서 국비로 자립교사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
- ③ 자립지원대상 기준에서 벗어났지만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있다. 시설을 중도 퇴소할 경우 자립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원가족의 요청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한 번 퇴소하면 재입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도퇴소자들이 심각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수 있다.
- ④ 자립지원기간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취업이나 진학한 경우 자립한 것으로 보고되는데, 그 후 실직이나 휴학 등 상황이 변경되었을 때 공식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가장 힘든 시기는 퇴소 직후보다 퇴소 후 1-2년 후이다. 이때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자립을 위한 준비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은 시설보호 중심으로 아이들 스스로 냉장고 사용이나 설거지 등 기초생활 경험이 특별히 부족하다. 자립체험관에서 2박3일에서 한달까지 장보거나 식사와 같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데, 이를 매우 힘들게 느낀다. 좀 더 어릴 때부터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진로선택이나 관련 지원을 연계하는 부분에서도 시설장이나 자립요원의 역량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아이들 스스로 다양한 경험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을 지원해야 한다.
- ⑥ 현실적이지 않은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빠른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한 실업계 학생에게 사교육이라는 이유로 학원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 2-2. '자립'개념에 대한 이해

전문가들은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자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행 지원에서의 '자립'은 보호종료 후 일정기간 내에 제공되는 현금과 서비스를 받고, 기초생활수급 등의 도움 없이 생활을 꾸리는 것으로 보인다. 김인숙(2007)의 성매매 여성의 자활과 관련한 연구에서 국가/정부의 관심사대로 자활을 평가하는 것의 한계를 잘 짚어내고 있다. 김인숙은 수치화, 계량화된 자활 평가 척도를 비판하며 자활에 대한 혼란과 오해의 중심에는 '자활 성공률'이 자리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거두절미하고,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탈수급', '탈빈곤'상태를 자활의 성공으로 본다.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대비 효율성이고, 정부의 관심은 경제적 자립으로 한정되는 자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sup>1)</sup>

청소년의 자립 경험은 대개 '함께 살다가(시설, 쉼터 등에서) 홀로 서는 과정'으로 묘사되곤 한다. 자립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의존하지 않고 홀로 살림을 꾸려가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을 떠나 개인화되는 것을 자립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인데 이는 자립을 어려운 과정으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누구도 혼자 살 수 없다. 이것은 보호종료 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2015년 위기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의 청소년 자립 개념 연구 보고서에서는 '관계적 자립' 개념을 제시하며 자립지원에서 '관계망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관계의 결핍은 유일한 관계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서원 역시 외로워서 집을 나왔고, 집 밖에서도 그녀는 외로움을 겪었다. 앞으로 '자립'을 준비한다고 할 때,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 문제 외에도 '외로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나이가 들어 독립하는 경우는 기존의 가족/사회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혼자 '독립적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에 가깝다면, 탈가정 청소년의 '자립'은 원가족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탈가정 이후 만들어졌던 일시적 관계들도 끊어진 채, 혼자만의 '외로운 섬'으로 밀려나는 일이 되기 쉽다.

쉼터 청소년 자립에 대한 질적 연구물들을 보면, 등장한 사례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함께 살 사람, 대화할 사람, 정서적 관계를 맺을 사람을 필요로 하며 자립에 있어서도

1) 김인숙(2007). "성매매 여성의 자활 진단척도 개발의 필요성 및 내용." 「성매매방지법 시행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매매 여성의 지속가능한 자활을 위한 대안 모색」자료집.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2015년 위기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연구결과 발표 "청소년 자립"밖에서 자립 찾기』 자료집에서 재인용.

고립되는 것이나 물어보고 상의할 사람이 없는 것을 가장 걱정하는 것, 힘든 것으로 꼽는다. 곰곰이 “사람이 굉장한 자원”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안정적인 관계망 속에서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자립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들 수 있다. 더군다나 가변성과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의 구조와 제도를 고려할 때, 관계 맺기를 통한 유대와 결속은 더욱 중요해진다. 사람의 삶을 지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의 실천을 굵은 뿌리에 빚댄다면, 위태로운 서로의 삶을 연결하고 부축하는 수많은 잔뿌리가 바로 관계 차원의 실천에 해당할 것이다. 아동생활시설인 대자원이 퇴소 선배들과 퇴소를 앞둔 청소년들의 만남을 열고, 자립을 앞둔 막막한 심정을 보듬는 시간을 갖는 것 역시 이러한 실천의 하나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튼실한 ‘관계망’을 조직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존 보호청소년 ‘자립척도’가 기초 의식주 해결 외에 사회적이고 주체적인 개인으로서의 측면을 담지 못하고 있고, 자립을 위해 사회가 제공하고 갖추어야 할 환경에 대한 측정 없이 청소년의 생활기술만 강조한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기존의 자립 척도는 ‘위기청소년’에게 결핍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기술이나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만들어지다 보니 그들이 처한 불평등의 맥락은 물론이고 존엄한 삶을 구성하는 보편적 권리와 욕구를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빚고 있다. 자립 척도 어디에도 웃고 놀고 창조하고 표현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인간으로서의 청소년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립 척도 어디에도 청소년들이 나의 존재, 나의 삶, 내 삶에 부과된 ‘위기’의 맥락, 나의 사회적 위치, 나를 둘러싼 사회구조 등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언어를 발견할 기회에 대한 고려는 없다. 자립 척도에서 ‘위기청소년’은 평가와 정책의 대상일 뿐, 자립의 과정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사회에 변경을 요구하는 주체가 아니다. 이는 단지 자립 척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청소년’자립 지원 정책과 현장이 무엇을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되돌아보게끔 하는 지점이다.... 청소년 개개인의 자립 준비 수준은 평가 대상이 되지만, ‘사회정책의 자립 지원 수준’은 평가 대상에서 배제된다. 일례로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15), 취업 지원(16), 진학지원(17), 기타 지원(18) 등의 정책 지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지원 정도가 미흡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왜 청소년의 자립 또는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사회의 자립 지원 역량을 제시한 척도는 발견할 수 없는가.

### 2-3. 당사자 경험에 기반한 지원 필요

보호아동의 발생원인과 당사자의 실제 상황에 기반하지 않으면 지원이 실제 효과를 얻기 어렵다. 당사자 인터뷰와 질적연구물들을 보면 양육시설 보호종료 청소년이 정착금과 CDA로 받은 약 천 만원의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보호과정에서 스스로 일정 규모 이상의 돈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퇴소 전에 경제교육 등을 제공하지만 교육을 받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교육받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막상 닥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믿고 상의할 사람이 없다. 보통 어려서부터 좋은 관계를 맺어온 선배라면 모를까 퇴소 즈음에 할당된 사례관리자를 신뢰하고 의지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런 경우 자립을 위한 돈, 운영을 위한 교육, 사례관리자를 모두 제공하지만 실패하게 된다.

18세 자립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보호연령을 높이는 것이나 자립생활관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제안들이 있는데, 많은 시설보호청소년들이 '자기만의 방'을 갖고 싶어 시설을 떠나고 싶어한다. 자립생활관도 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독립의 욕구가 강한 반면, 시설의 규칙에 따라 살아오며 주도적인 결정이나 활동, 생활기술사용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립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경우라면 독립생활을 하면서 상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선배가 가까이 있던지, 일정기간 독립생활 후 필요하면 다시 시설에서 지낼 수 있는 등의 유동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경주 푸르른지역아동센터는 전체 인원의 50%가 중고생으로 이들의 센터보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자립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푸르른지역아동센터는 정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 이용아동이 원하는 취미, 특기, 경험을 원하는 시기에 제공한다. 하고 싶은 것이 없으면 몇 개월이건 시간을 보내도 되고, 가격이 비싼 체력단련기구도 필요하다면 구해준다. 신청한 프로그램을 끝까지 하지 못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수의 지역아동센터가 정부가 씌어 놓은 패러다임(아동을 보호하는 기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배분기관의 공모사업을 통해 운영비와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음. 그렇게 되면 결국 아동이 원하는 프로그램보다는 공모사업에 맞춘 프로그램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아이들이라고 여염집 아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꿈'을 꾸니다. 아이들은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시기에 맞춰 동기부여되지 않습니다. 한겨울에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태권도, 어떨 때는 음악일 수 있어요. 하다가 그만둘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여염집에서 아이 하나하나 학원 보내듯, 자전거 사주듯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은 프로그램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푸르른지역아동센터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청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패하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 주도성'을 경험하고, 처지로 인해 남들과 다르다는 '낙인감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보호방식이 개별화, 가정중심으로 바뀌고, 양육시설 실무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꿈마을은 자생적 아동복지청소년 자립시설로 2-3년 후 시작을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빨리 추진되고 있습니다. 30억 모금계획으로 벌써 10만원기부시 벽돌 한장 개념의 구좌에 돈을 보내는 사람들이 계세요. 의지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장기적 프로젝트로 실패해도 지지해주는 시스템이 되고자 합니다. 꿈마을 TV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명사를 인터뷰해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스스로의 꿈을 탐색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탈학교 아이들의 멘토가 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성공만 배울 수 없고 넘어져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여 능선을 넘는 경험을 해야 산을 오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음. 그 과정에서 목사님이나 꿈마을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고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는 어른이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는 어른으로 함께할 것입니다.(송경호 목사님 인터뷰 중)

이 구상은 지역사회 어른들과의 교류를 통한 관계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물론 이런 과정이 가능한 것은 센터가(센터장이 '약속을 지키는 어른'으로서 결을 지키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름다운재단의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사례나 아동자립지원단의 바람개비 서포터즈 활동 사례에서도 물질적 지원보다는 청소년들간의 관계맺음. 믿을 수 있는 선생님과의 소통이 주는 안정감, 지원사업을 통해 알게 된 좋은 어른과의 관계가 당사자에게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점이 발견된다.

### 3. 소결

보호종결 청소년의 자립지원관련 선행연구와 전문가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된 것은 '양육시설보호 중심'이다. UN아동권리협약에서도 가정중심의 보호환경을 강조하였다. 가능하면 월가정 양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 1인 기준으로 정부지원은 시설보호일 때 가장 크다.

매년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실태 통계가 나오지만, 이들이 안정적 직업, 인적 네트워크

크 등을 구성하며 성인기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 설문에 기반한 보고서들은 그나마 시설이나 담당자와 관계가 좋은 당사자로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중간 퇴소를 포함하여 보호종료 청소년의 현황에 대해 체계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지원제도와 예산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사각지대를 만드는 지원전달의 디테일을 강화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개별적 지원이 가능해져야 한다. 이는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하여 받는 과정에 대해서도 사회경험이 전무한 청소년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립'이 지속적인 과정이자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는 과정으로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보호종료청소년을 다른 동년배와 비교해본다고 하면 18세 현재 갖고 있는 현금,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 정부로부터 주거지원 등 뒤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청소년도 18세에 당장 평생 먹고 살 직업을 정하고 그에 맞춰 기술을 익히거나 학업을 결정하지 않는다. 보호종료시기에만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꿔지지 않게 불리한 상황으로 몰리는 것이다.

또한 물질적인 지원을 주고 이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청소년이 지게 되는 상황 또한 부당하다. 청소년, 청년기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아를 정립하는 시기이다. 보호아동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움츠러드는 이들에게 향후 성인기의 큰 자산이 될 든든한 관계망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IV. 개선과제

선행연구와 전문가 인터뷰에서 제시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과 관련된 개선과제는 첫째, 제도/행정의 개선(국가의 역할), 둘째, 대안적 자립지원을 위한 실험과 보완(민간의 역할), 셋째, 가정보호 외 아동에 대한 장기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제도/행정 개선과제\_국가의 역할

| 구분                | 개선과제(안)  | 비고                          |
|-------------------|--|-----------------------------|
| 현행제도의 불합리성 개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정 외 보호 청소년에게 동일한 지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자립정착금의 금액, 지원시기 등 표준화</li> <li>-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의 상이한 지원내용 표준화</li> <li>- 중도퇴소자 사례관리 및 필요 시 지원할 수 있게 함</li> <li>- 시설미성년후견법상 보호시설 등 가정 외 보호 청소년 전체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표준화</li> </ul> </li> <li>2. 보호연장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요청으로도 연장할 수 있게 함</li> <li>- 휴학 등으로 보호연장 중단하지 않을 수 있게 함</li> </ul> </li> <li>3. (신규제언)지원누락 모니터링 및 긴급지원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지원이 누락될 경우 문의, 구제신청, 긴급지원 받을 수 있는 창구 마련</li> </ul> </li> </ol>  |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 현실적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확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호종료 연령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세, 21세, 24세 안 논의 필요</li> <li>- 19세 보호종료, 24세 의무적 지원, 29세까지 선택적 지원 안 등 단계적 지원 가능</li> <li>- Second Chance : 지원종료 후 필요 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함</li> </ul> </li> <li>2. 지원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지원 확대 및 선택지 확대</li> <li>- 고등교육 확대를 위한 진로교육 내실화, 기초학력지원, 학비/생활비 지원 확대</li> <li>- 양질의 취업을 위한 심리지원 및 취업연계 네트워크</li> <li>- 건강보험 체납자 구제 및 의료지원</li> </ul> </li> <li>3. 건강한 의존으로서의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아동의 심리적 외상치료와 원가족 개입 병행</li> </ul> </li> <li>4. 자립지원 접근성 강화 및 전담인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자립지원관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li> <li>- 자립지원 접수창구 일원화</li> </ul> </li> </ol> |                             |
| 지원 인프라 강화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호시설 실무자, 자립지원인력 역량강화</li> <li>2. 신뢰성 있는 통계 구축</li> </ol>  |                             |

## 2. 대안적 자립지원을 위한 보완과 실험-민간의 역할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지원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크고 그 내용은 법제화에 기 반해야한다. 현재까지 민간의 지원은 부족한 자립정착금,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를 보조 하는 사업이 주류였다. 정부 지원이 확대되기 시작했지만 민간의 보조적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향후에는 '자립'을 재화와 서비스 제공으로 단번 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인으로 사회에 자리잡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한 다면 현재 지원방식을 넘어서는 접근과 실험이 필요하다. 이는 첫째, 정부지원을 크게 변 화시키거나 확대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모델로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식, 둘째, 물질 적 지원 외에 공동체 통합이나 네트워크 강화 등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 셋째, 가 정 외 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지원을 크게 변화시키거나 확대해야 하는 경우 시범모델을 실시하는 방식은 앞에서 제시된 정부지원확대사항을 미리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공동모금 회가 삼성의 지원을 받아 전국에 총 10개까지 자립지원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추 진하고 있다. 모금회는 한국형 자립생활 모델이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센터 를 지원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전문가 인터뷰에서 언급된 자생적 아동복지청소년 자립시설인 꿈마을도 향후 자립지원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 함께걷는아이들의 '자몽'프로젝트도 대안적인 자립역량 측정개념을 실험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의 자립역량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둘째, 물질적 지원 외에 공동체 통합이나 네트워크 강화 등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 식이다. 아름다운재단의 교육비/생활비/주거비 지원사업에서 장학생 캠프를 통해 자조그 룩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또한 재단의 김군자할머니 기금 모금에 보호종료 장학금 장학 생이 커피블렌드 개발로 참여함으로써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사회전체, 지역공동체에 존 중받는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경험과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시 민으로의 성장과 역량을 키워갈 수 있다. 최근 '고아권익연대'나 소이프, 빈브라더스 등 당사자 중심 조직들을 적극 지원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셋째, 가정 외 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 성소수자, 외 국인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매체재현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기관이 있지만 소위 '시 설출신'이나 '고아'가 매체에서 재현되는 방식에 대한 모니터링은 발견되지 않는다. 금번

아름다운재단 캠페인에서 '보호종료 청년 당사자 동영상'은 당사자가 대중에 긍정적인 존재로 그려진 흔치 않은 계기였다. 차별을 하고자 하여 하는 것이 아니지만, 당사자에 대한 이해와 경험부족으로 생긴 편견들을 성찰할 수 있는 사회 공론의 장을 열 수 있어야 한다.

### 3. 가정보호 외 아동에 대한 장기과제

제대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자립시기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호과정 전체가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시설보호중심의 현재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요구하며 구체적으로는 가정환경에 유사한 보호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보고서의 제일 앞부분에 제시한 보호발생아동의 사유를 다시 들여다볼 것을 요구한다.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가 불가능한 아동에게는 좋은 입양과 가정위탁 환경은, 단지 경제적 이유로 양육이 어렵다면 원가정에서 양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학대 등으로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발생원인   | 유기  | 미혼부모, 혼외자 | 미아  | 비행/가출/부랑 | 학대    | 부모빈곤/실직 | 부모사망/질병 | 부모이혼 | 계     |
|--------|-----|-----------|-----|----------|-------|---------|---------|------|-------|
| 수(명)   | 320 | 623       | 18  | 231      | 1,415 | 198     | 376     | 737  | 3,918 |
| 비율 (%) | 8.2 | 15.9      | 0.5 | 5.9      | 36.1  | 5.1     | 9.6     | 18.8 | 100.0 |

표 14. 2018년 신규발생 보호대상아동 (출처:국가통계포털)

첫째,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동양육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시설에서 아동 한 명을 보호할 때 월 160만원이 든다고 할 때, 가정에서 키울 경우 월 15만원만 지원된다. 이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둘째, 국내입양활성화 및 일반위탁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친부모의 친권에 대응하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무를 강화하여 잘못된 친권행사로 피해받는 아동/청소년이 없어야 한다. 넷째, 구체적인 계획하에 양육시설중심 보호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과제는 정부나 민간, 학계 누구의 힘으로만 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전체가 모든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별첨자료1]

##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1662 |
|----------|-------|

발의연월일 : 2019. 7. 25.

발 의 자 : 윤후덕.주호영.유승민

심상정.박홍근.김수민  
 이명수.고용진.이찬열  
 윤소하.박 정.김영호  
 맹성규.임종성.남인순  
 신창현.여영국.김상희  
 전해철.송갑석.최도자  
 윤일규.기동민.표창원  
 오제세.김세연.전혜숙  
 정춘숙.김광수.제윤경  
 의원(30인)

### 제안이유

현행 「아동복지법」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보호기간연장이 끝나 위탁보호가 종료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할 때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이를 위해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의 내용과 방법은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미흡하고,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이 아니며, 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은 다양한데,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아동만 자립지원의 대상이며,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중 다른 법률이나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자립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모든 아동·청소년으로서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전이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등한 자립지원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관부처나 적용 법률이 무엇인가와 무관하게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자립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내용·방법 등의 지원체계도 개선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이 성인기로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 가. 자립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부모와 보호시설의 장, 위탁가정 부모의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중앙자립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라. 개별지원자와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마. 자립지원의 신청, 개인별 사정에 맞게 반영할 수 있는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과 확정, 지원 연장 등 자립지원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23조까지).
- 바. 자립지원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제23조), 부모의 부양의무와의 관계 등을 규정함(제35조).
- 사.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34조까지).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자기책임 및 사회적 연대의식하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 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 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일반지원시설과 청소년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2. “위탁가정”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일정기간 위탁되는 가정을 말한다.

3.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란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이 법에 따른 자립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별지원”이란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개인별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그에게 개인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지원자가 전담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개별지원자”란 개인별지원 대상인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하 “개인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라 한다)을 개인별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전담하여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어떠한 차별이나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정 및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부모의 책임) ①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부모는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이 면담, 상담,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②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부모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제5조(보호시설의 장 등의 책임) ① 보호시설의 장 및 위탁가정의 부모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자기책임과 사회적 연대의식하에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

② 보호시설의 장 및 위탁가정의 부모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보호시설의 장 및 위탁가정의 부모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이 법에 따른 개인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 부모 및 보호시설의 장 등의 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을 고려하여 중복수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개인별지원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은 이 법률에 따른 지원으로 간주한다.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생활·복지·교육·취업·주거 등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3.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지원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 및 제도 개선
4.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부처별 주요 시책과 협조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자립지원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아동·청소년자립지원추진위원회) ① 아동·청소년자립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아동·청소년자립지원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2. 보호시설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립지원기본계획의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예상 인원, 기존의 지원 근거와 내용, 지원에 대한 수요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은 시·도지사,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를 상호 공유하여 제7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의 아동·청소년자립지원추진위원회의 심의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정보의 공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자립지원 기관 등

- 제12조(중앙자립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2. 제13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및 운영 지원

3. 자립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제공
4.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자립지원 사업 추진실적 분석·평가
6.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위기관리를 위한 긴급지원 콜센터 운영 및 긴급지원 서비스 개발
7. 개별지원자에 대한 보수교육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중앙자립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립지원전담기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수, 지역적 분포, 지원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수 개의 시·군·구 단위로 1개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소재지, 직원 채용, 예산의 분담 등 협약서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정보의 제공 및 연계
2. 개인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3. 개별지원자의 배정
4. 개인별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및 개별지원자에 대한 관리. 자립지원계획 실행 점검을 위한 회의체 운영을 포함한다.
5.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6.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의 자립 관련 교육·상담 지원
7.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설치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개별지원자 1인당 30인 이상의 개인별지원대상 청소년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배정할 수 있다.

④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개별지원자의 배정에 있어서 개인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문화, 의견, 성별, 종교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직영하거나 공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유사한 성격의 공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전담공무원) ①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자립지원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며, 관할 구역의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 공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①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호시설, 위탁가정 등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6조(개별지원자의 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개별지원자를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한다.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아동·청소년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아동·청소년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개별지원자는 개인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거나 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은 개별지원자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아동·청소년이 개별지원자의 재배정을 요구한 경우 이의제기 대상자는 이의절차가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개별지원자로 활동할 수 없다.

제17조(보수교육) ① 개별지원자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상담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자립지원 절차 등

제18조(자립지원 신청 등) ①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의 위탁가정 부모, 그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탁받은 보호시설의 장,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립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신청을 받은 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에게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지원의 내용·범위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신청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개인별지원 급부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은 개인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15

세 이상 17세 이하의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2.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14세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3세 이하의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으로서 가정복귀가 되지 않았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에 의한 돌봄이 취약하여 성인기로 전이하는 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제20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개별지원자를 배정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개인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개인별지원의 내용·범위 등을 파악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신청인,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그의 부모 또는 후견인, 보호시설의 장 및 위탁가정의 부모를 면담하여야 하고, 그 밖에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을 면담할 수 있다.

② 개별지원자가 수립할 개인별지원계획에는 경제적 지원(부양청구권 행사의 지원을 포함한다), 교육적 지원, 의료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개인별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거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대상자인지 여부의 판단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방법, 절차, 내용, 변경·수정, 지원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개인별지원계획의 검토 및 변경) ① 개별지원자는 매년 개인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개인별지원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지원기간 및 연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24세가 될 때까지 개인별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경계선지적기능·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
4.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 연장의 기준·기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행위능력) ① 「민법」 제1조부터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의 신청·수령, 수령한 지원 관련 급여의 처분, 기타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은 행위능력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변경 등에 관한 사

항은 개별지원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개별지원자는 이 법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의 신청·수령, 수령한 지원 관련 급여의 처분, 기타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 다만, 의사능력이 있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으로서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장 자립지원의 내용

제24조(생활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의해 정해진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개인별 사정을 고려하여 생활지원을 결정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기준·지원금액·지원기간·지원방법·절차, 제3항에 따라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지원금의 처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의해 정해진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임대주택의 공급 또는 임시주거비 지원 등의 주거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의해 정해진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자아실현 및 자립을 위하여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건의료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의해 정해진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건강검진, 상담, 진료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진료시설로 지정하고, 전문적인 처치와 수술 등을 필요로 하는 전문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고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의해 정해진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범위와 해당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5.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1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심리·정서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인적·물적 대상과 상호작용하며 유대감 및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봉사·취미·교육 프로그램 등의 집단적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정서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긴급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법률·의료·심리·경제적 지원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자립지원 외에 문화·예술·스포츠 등의 영역에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부모의 부양의무와의 관계) 부모가 아동·청소년을 부양할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이 제5장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아동·청소년의 부양 청구권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범위에서는 시·군·구에 이전된다.

## 제6장 보칙

제36조(보고와 검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2조의 중앙자립지원센터, 제13조의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7조(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자립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아니면 중앙자립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0조(이의신청) ① 자립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용 결정, 개별지원자의 배정과 변경,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7장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앙자립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자
3. 제3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그 밖의 개인이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1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장제2절의 제목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을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으로 한다.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한다.

[별첨자료2.]보호종로청소년 민간 자원사업현황

I.사업종류별 수행기관

| 항목                | 수행기관         | 후원기관               | 프로그램명                | 목적  | 대상   | 지원내용   | 시행기간          | 연간예산<br>·아동수                     | 비고   |
|-------------------|--------------|--------------------|----------------------|---|--|--|---------------|----------------------------------|--|
| 자원역량<br>강화        | 부산아동<br>복지협회 | KRX,국<br>민행복재<br>단 | 자립의<br>희망과<br>꿈을 향해  | 퇴소예정 청소년이 세상에서<br>견제 될 시행착오를 줄이고<br>사회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키<br>울 수 있도록 경제적, 정신적<br>자립 프로그램 추진 | 퇴소예정 청소년   | 2박 3일간의 독립생활을 통한<br>과제 수행으로 자립체험 프로그<br>램 진행   | 2012~<br>2018 | 매년<br>약200명                      | 중단사유: 시(市)에<br>서 비슷한 사업 많<br>이 시행하고 있음   |
|                   | 한국SOS어린이마을   |                    | 다양한<br>프로그램<br>실시    | 퇴소 후 심리적, 사회적 지원<br>체계 지원, 상담, 직업상담,<br>취업 지도 등                                       | 퇴소아동 대상  | 퇴소아동 및 예정 아동을 위한<br>모금사업, 자립 관련 프로그램<br>운영   |               |                                  |  |
| 자립관<br>·자립지원<br>금 | 한국SOS어린이마을   |                    | SOS자립생<br>활관         | 보호종로 아동들의 퇴소 후<br>독립된 주거공간 제공   | 아동복지시설 퇴<br>소아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에 자립관 2개 운영</li> <li>입소 지원서 이력서/자소서<br/>제출 및 면접 실행(사회경험<br/>시뮬레이션 위해)</li> </ul>  | 10년+          | 자립관<br>마다<br>약 28명<br>(남녀)       | 아동들이 자립관에<br>서 길면 2-3년 지<br>냄(이후 1,2주택<br>입소 또는 학교 기<br>숙사, 독립 등)  |
|                   | 장학금·<br>생활비  | 교보교육재단             |                      | 교보생명<br>희망다솜<br>장학사업  | 학비와 생활비 조달의 이종고<br>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br>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에 전념<br>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br>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큰<br>의미의 가족을 만들 수 있는도<br>특 장학생 커뮤니티 '희망과<br>다솜'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입학부터 졸업시(8학기)<br/>까지 장학금 지원(학기당<br/>200만원)</li> <li>※ 단, 1학년 1학기 이후 학기<br/>별로 심사를 거쳐 학기평균 3.0<br/>점(4.5만점 기준) 이상일 경우<br/>에만 지급. 성적 우수생은 추가<br/>장학금(1인당 연간 최대 560만<br/>원 지원가능)</li> <li>■ 도서비 1인당 6만원 지원</li> <li>■ 점프, 권역별 모임 등 커뮤니<br/>티 지원</li> </ul> | 2003~         | 누적 50<br>억 원/매<br>년 총 20<br>명 내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0년까지 보<br/>호종로 아동만<br/>지원/이후 저<br/>소득층 가정도<br/>지원</li> <li>현재 17기 장<br/>학생 선발/총<br/>358명 지원</li> </ul> |
|                   | 아름다운가게       |                    | 보육원성장<br>대학생지원<br>사업 |   | 서울지역 7개 앞<br>통 앞 유 시설에서<br>성장한 대학재학<br>생 (만18~28세)   | 졸업시까지 월 생활비 30만원   | 2019~         | 약4.9천<br>만<br>원/18명              |  |
|                   | KRX국민행복재단    |                    | KRX<br>DREAM         |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에 첫발<br>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 기초생활수급자<br>(아동보호시설 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RX장학생 선정(2년): 대학<br/>진행 퇴소예정 청소년 지원</li> </ul>   | 2015~         | 총 20명<br>선발                      |  |



표 여러종류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

| 수행기관                             | 후원기관              | 프로그램  | 목적   | 대상  | 항목                     | 지원내용  | 시행기간              | 연간예산<br>·아동 수             | 비고  |
|----------------------------------|-------------------|---|--|---|------------------------|---|-------------------|---------------------------|---|
| 보라더스키퍼                           |                   |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들에게 일자리 연계를 통해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   | 취업<br>취업준비<br>심리·정서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과정 우대사항</li> <li>■ 타 회사와 연계</li> </ul> 정서지원 프로그램(영월 모임, 자전거 타기 등)  | 2018~             | 직원 5명 / 타 회사와 연계한 아동 100명 |   |
| 사회연대은행                           | HSBC코리아           | 청소년비전지원사업   |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및 자립지원시설 퇴소 예정 청소년을 위한 경제생활 역량강화, 사회관계망 확장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 자립지원                              | 서울소재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자립형그룹홈 및 자립지원시설 청소년 중 2020년 1월~3월 이내 퇴소 예정자                | 자립관<br>자립지원금<br>자립역량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소예정 청소년 20명 자립지원금 및 비전교육지원</li> <li>■ 매월 30만원의 지원금 (총 600만원)</li> </ul> 제우 및 금융 교육, 실생활 지원, 미래비전지도, 설계 등 (총 23회 필수) | 2019~2021 (20개 월) |                           |   |
| 사회연대은행<br>정년지갑 트레이닝 센터           | 한화생명<br>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청년꿈 지원사업<br>청년비상금   |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예정) 3년간의 경제생활 역량강화, 사회관계망 확장을 통한 건강한 사회적 자립지원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중 생활가정 청소년 중 자립의지가 있는 자 (2014.01.01 이후 퇴소자, 2020.01.31 이내 퇴소예정자) | 자립관<br>자립지원금<br>자립역량강화 | 약 10개월간, 매월 지원금 1인당 월 35만원 (총 350만원)<br>OT, 제우 및 금융 전문가 멘토링 4회, 진로 및 비전교육, 소모임 6회 (총 10회)   | 2018~             | 모집인원 11명                  |   |
| 소이포속(SOYF)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희물링 커뮤니티  | 아동의 통합적 자립지원을 통한 긍정적 자립모델 제시 및 통합지원 체계 구축  | 보육시설 퇴소 청소년 (만18세 이상)   | 심리·정서지원<br>자립역량강화      | 매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링 제공  | 2018~             | 18명                       |   |
| 아동권리보장원<br>한국산림복지진흥원<br>현대차정몽규재단 | 나의꿈을 찾는 숲속힐링교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도모</li> <li>■ 아동의 자립역량강화 및 자존감 향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시설·가정 위탁 보호아동 및 연장·퇴소아동</li> <li>■ 시설근무자, 자원봉사자, 후견인 등</li> </ul> | 심리·정서지원<br>자립역량강화   | 2박 3일 산림치유 및 자립준비 프로그램 | 2014~   | 6억원               |                           |   |
| 아동권리보장원                          | 현대차정몽규재단          | 은드림청사진 (청년사회진출)   | 주거, 자기개발 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통한 안정적 자립기반 제공  | 시설·퇴소아동 20명씩 3년 동안 지원   | 자립관<br>자립지원금<br>장학금    | 보충금, 월세 지원<br>■ 자기개발비: 등록금, 자격증/학원 수강, 연구비, 대학원   | 2016~             | 10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4기까지 지원(총 80명)</li> <li>■ 올해 첫 졸업생 (1기) 배출</li> </ul> |

|   |  |   |  |                                      |   |                             |               |
|---|--|---|--|--------------------------------------|---|-----------------------------|---------------|
|   |  |   |  |                                      | <p>보호종결아동의 긍정적인 자립모델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자립역량 강화</p>  |                             |               |
| <p>자립역량강화</p>   | <p>심리·정서지원</p>   | <p>사례관리<br/>자립지원체계 구축</p>   | <p>자립지원비(교육/훈련, 주거/에너지, 건강/의료, 기초생활 중 등) 최대 500만 원(기초생활은 최소 15만원~최대 120만원)<br/>사례관리(행위) 최대 10만원(선택 신청항목)</p> | <p>서울, 경기 지역 보육원 퇴소아동 (만 18~27세)</p> | <p>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자립형그룹홈, 퇴소아동자립지원시설, 퇴소 예정정(소)년을 위한 경제생활 역량강화, 사회관계망 확장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 자립지원</p> | <p>보육원 퇴소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사업</p> | <p>아름다운가게</p> |
| <p>자립역량강화 교육: 명사 특강, 이미지메이킹, 클래식/스피치 특강</p> <p>경제교육: 생애설계, 생활경제, 보험 등</p> <p>진로교육: 인생설계, 직업선택 등</p> | <p>전문가 멘토 연계: 각 분야의 전문가 만남 및 강의</p> <p>자립선배와의 만남: 만남으로 정서적 안정 도모</p> | <p>사례관리: 대면,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관리</p> <p>긴급지원체계: 위기상황 발생 시, 심사 후 의료 혹은 생활비 지원</p> <p>연구보고서 발간: 3년간의 지원사업 완료 후 결과 보고서 발간</p> | <p>자립지원비(교육/훈련, 주거/에너지, 건강/의료, 기초생활 중 등) 최대 500만 원(기초생활은 최소 15만원~최대 120만원)<br/>사례관리(행위) 최대 10만원(선택 신청항목)</p> | <p>서울, 경기 지역 보육원 퇴소아동 (만 18~27세)</p> | <p>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자립형그룹홈, 퇴소아동자립지원시설, 퇴소 예정정(소)년을 위한 경제생활 역량강화, 사회관계망 확장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 자립지원</p> | <p>보육원 퇴소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사업</p> | <p>아름다운가게</p> |
| <p>진학, 적성개발 등</p> <p>어학연수: 우수학생 심사 후 선발</p>   | <p>2019년: 99,590,390원/34명<br/>2010년~총계: 577,519,801원/210명</p>        | <p>2010~</p>  | <p>2010~</p>   | <p>서울, 경기 지역 보육원 퇴소아동 (만 18~27세)</p> | <p>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자립형그룹홈, 퇴소아동자립지원시설, 퇴소 예정정(소)년을 위한 경제생활 역량강화, 사회관계망 확장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 자립지원</p> | <p>보육원 퇴소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사업</p> | <p>아름다운가게</p> |
| <p>자립역량강화 교육: 명사 특강, 이미지메이킹, 클래식/스피치 특강</p> <p>경제교육: 생애설계, 생활경제, 보험 등</p> <p>진로교육: 인생설계, 직업선택 등</p> | <p>전문가 멘토 연계: 각 분야의 전문가 만남 및 강의</p> <p>자립선배와의 만남: 만남으로 정서적 안정 도모</p> | <p>사례관리: 대면,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관리</p> <p>긴급지원체계: 위기상황 발생 시, 심사 후 의료 혹은 생활비 지원</p> <p>연구보고서 발간: 3년간의 지원사업 완료 후 결과 보고서 발간</p> | <p>자립지원비(교육/훈련, 주거/에너지, 건강/의료, 기초생활 중 등) 최대 500만 원(기초생활은 최소 15만원~최대 120만원)<br/>사례관리(행위) 최대 10만원(선택 신청항목)</p> | <p>서울, 경기 지역 보육원 퇴소아동 (만 18~27세)</p> | <p>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자립형그룹홈, 퇴소아동자립지원시설, 퇴소 예정정(소)년을 위한 경제생활 역량강화, 사회관계망 확장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 자립지원</p> | <p>보육원 퇴소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사업</p> | <p>아름다운가게</p> |
| <p>자립역량강화 교육: 명사 특강, 이미지메이킹, 클래식/스피치 특강</p> <p>경제교육: 생애설계, 생활경제, 보험 등</p> <p>진로교육: 인생설계, 직업선택 등</p> | <p>전문가 멘토 연계: 각 분야의 전문가 만남 및 강의</p> <p>자립선배와의 만남: 만남으로 정서적 안정 도모</p> | <p>사례관리: 대면,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관리</p> <p>긴급지원체계: 위기상황 발생 시, 심사 후 의료 혹은 생활비 지원</p> <p>연구보고서 발간: 3년간의 지원사업 완료 후 결과 보고서 발간</p> | <p>자립지원비(교육/훈련, 주거/에너지, 건강/의료, 기초생활 중 등) 최대 500만 원(기초생활은 최소 15만원~최대 120만원)<br/>사례관리(행위) 최대 10만원(선택 신청항목)</p> | <p>서울, 경기 지역 보육원 퇴소아동 (만 18~27세)</p> | <p>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자립형그룹홈, 퇴소아동자립지원시설, 퇴소 예정정(소)년을 위한 경제생활 역량강화, 사회관계망 확장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 자립지원</p> | <p>보육원 퇴소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사업</p> | <p>아름다운가게</p> |
| <p>자립역량강화 교육: 명사 특강, 이미지메이킹, 클래식/스피치 특강</p> <p>경제교육: 생애설계, 생활경제, 보험 등</p> <p>진로교육: 인생설계, 직업선택 등</p> | <p>전문가 멘토 연계: 각 분야의 전문가 만남 및 강의</p> <p>자립선배와의 만남: 만남으로 정서적 안정 도모</p> | <p>사례관리: 대면,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관리</p> <p>긴급지원체계: 위기상황 발생 시, 심사 후 의료 혹은 생활비 지원</p> <p>연구보고서 발간: 3년간의 지원사업 완료 후 결과 보고서 발간</p> | <p>자립지원비(교육/훈련, 주거/에너지, 건강/의료, 기초생활 중 등) 최대 500만 원(기초생활은 최소 15만원~최대 120만원)<br/>사례관리(행위) 최대 10만원(선택 신청항목)</p> | <p>서울, 경기 지역 보육원 퇴소아동 (만 18~27세)</p> | <p>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자립형그룹홈, 퇴소아동자립지원시설, 퇴소 예정정(소)년을 위한 경제생활 역량강화, 사회관계망 확장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 자립지원</p> | <p>보육원 퇴소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사업</p> | <p>아름다운가게</p> |
| <p>자립역량강화 교육: 명사 특강, 이미지메이킹, 클래식/스피치 특강</p> <p>경제교육: 생애설계, 생활경제, 보험 등</p> <p>진로교육: 인생설계, 직업선택 등</p> | <p>전문가 멘토 연계: 각 분야의 전문가 만남 및 강의</p> <p>자립선배와의 만남: 만남으로 정서적 안정 도모</p> | <p>사례관리: 대면,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관리</p> <p>긴급지원체계: 위기상황 발생 시, 심사 후 의료 혹은 생활비 지원</p> <p>연구보고서 발간: 3년간의 지원사업 완료 후 결과 보고서 발간</p> | <p>자립지원비(교육/훈련, 주거/에너지, 건강/의료, 기초생활 중 등) 최대 500만 원(기초생활은 최소 15만원~최대 120만원)<br/>사례관리(행위) 최대 10만원(선택 신청항목)</p> | <p>서울, 경기 지역 보육원 퇴소아동 (만 18~27세)</p> | <p>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자립형그룹홈, 퇴소아동자립지원시설, 퇴소 예정정(소)년을 위한 경제생활 역량강화, 사회관계망 확장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 자립지원</p> | <p>보육원 퇴소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사업</p> | <p>아름다운가게</p> |



## 발제문 2

### 아름다운재단 보호종료아동 대상 지원사업의 전개 및 작은변화(성과)

※ 아름다운재단 보호종료아동 대상의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과 '시설퇴소 및 위탁종료대상 주거안정지원사업'은 '아동권리보장원(前 아동자립지원단)'과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I.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2001년 - 현재)

##### 1. 지원사업의 전개 및 확충 과정

###### 1) 사업 시작 배경

- 열입굼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끌려가 모진 시련을 겪으신 故 김군자 할머니. 자신처럼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기를 바라며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해 2000년 8월 아름다운재단 1호 기금 '김군자할머니기금' 조성. 아름다운재단은 기부자의 취지를 살려 만 18세가 되면 정부정착금<sup>1)</sup>으로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 대상의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2001년 시작

######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학업유지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을 통한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자립 도모
-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보호종료 또는 연장보호 대학생<sup>2)</sup> 60명 ※ 연도별 지원인원 상이
- **지원내용**
  - 연간 교육비(학비, 자기계발비) 300만원, 학업생활보조비 100만원 1인 총 400만원

1) 자립정착금(아동복지법 제 38조) :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정부지원금으로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아동 1인당 300만원 ~ 500만원 지급

2) '14년~'18년 기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는 한해 평균 2,550명의 아동이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되고 있음. '18년에는 2,606명이 보호종료 되었으며, 이중 대학 진학자는 488명으로 약 18%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19) 2018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지원, 단기어학연수(1인 약 700만원 지원, 총 5명 별도 선발을 통해 지원)

- 자립역량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프로그램(자립정보 교육,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작은변화프로젝트, OT, MT, 홈커밍데이 등) 운영

| 프로세스              | 내용   |
|-------------------|--|
| 장학생 선발            | 홍보모집 ▶ 서류접수 ▶ 적격여부 검토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최종 합격 ▶ 교육비 지원   |
| 장학증서 전달식 및 오리엔테이션 | 장학증서 전달식 및 오리엔테이션<br>- 지원사업 안내, 자립역량강화 교육, 지지체계 형성 프로그램  |
| 교육비, 학업생활보조비 지원   | 연중 1인 총 400만원 교육비, 학업생활보조비 지원<br>- 교육비(등록금, 자기계발비) 300만원<br>- 학업생활보조비 100만원  |
| 모니터링을 통한 사례관리     | - 2회 이상 장학생 모니터링   |
| 단기어학연수            | 단기어학연수 선발 및 지원<br>- 별도의 심사를 통해 연 5명 규모 선발 지원<br>- 7월 ~ 8월 중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진행, 11월 결과공유  |
| 작은변화프로젝트          | 작은변화 프로젝트 팀활동 (舊 자치활동) *2019년 신설<br>- 선후배 장학생으로 구성된 팀 프로젝트 활동<br>- 기자단, 나눔팀, 디자인팀, 사람책운영팀, 영상제작팀, 정책제안팀, 프로그램기획팀, 홍보팀 등의 주제별 팀 구성<br>※ 지역별 장학생들 간의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자치활동에서 2019년도부터 주제별 프로젝트 팀활동으로 변경 운영 |
| 장학생 MT            | - 장학생 간 친목 도모, 문화체험 프로그램, 자립역량강화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  |
| 홈커밍데이             | - 선후배 장학생 간 지지체계 형성할 수 있는 자리로 연중 진행된 활   |

3) 연도별 주요 진행 내용

| 구분            | 학업유지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 자립준비 역량강화·지지체계 형성 프로그램  |
|---------------|---|---|
| 2001년 - 2013년 | - 1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   | - OT, MT ※연도별 상이<br>- 연 2회 연수교육 실시(자립준비 역량강화 교육 진행)   |
| 2014년 - 2016년 | - 최대 2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1인 약 1000만원 한도)<br>- 학업생활보조비 1인 100만원 지원(학기당 50만원)<br>- 장학생 특전 : 단기어학연수(1인 700만원 지원), 자기주도성 자기계발 프로젝트(1인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별도 선발(각 5명)        | - OT, MT, 종결식<br>- 지역별 자치활동 및 봉사활동<br>- 모니터링을 통한 사례관리<br>- 온라인 모임 활동  |
| 2017년 - 현재    | - 최대 2년간 교육비(등록금, 자기계발비) 1인 300만원 지원 ※자기계발 프로젝트 장학생 특전에서 전체 장학생으로 확대 지원<br>- 학업생활보조비 1인 교육비의 30%(120만원) → 100만원 지원<br>- 장학생 특전 : 단기어학연수(1인 700만원 지원) ※별도 선발(5명) | - OT, MT, 홈커밍데이<br>- 지역별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작은변화프로젝트 팀활동(2019 신설)<br>- 모니터링을 통한 사례관리 강화<br>- 온라인 모임 활동<br>- 길잡이(졸업생) 활동을 통한 지지체계 형성 강화(2019 신설) |

2. 지원사업 작은변화(성과)

○ 지원현황

- 2001년 ~ 2018년 누적<sup>3)</sup> 선정인원 총 770명, 총 지원금액 3,334,893,633원<sup>4)</sup>
- 2017년 포괄적 범위의 교육비 지원으로 확대 변경 이후(등록금, 학업생활보조비 외 자기계발비 지원 포함) 선정인원 대비 3배수 이상의 높은 신청율을 나타내고 있음(2016년 86명, 2017년 172명, 2018년 202명, 2019년 190명)

3) 2019년도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2018년까지 기준으로 작성

4) 지원인원의 경우 선정시점 기준이며 지원기간 중 중도탈락, 지원중단 등의 사유로 최종 지원인원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연속지원 등으로 중복대상자 포함되어 있음. 한편 지원금액의 경우 결산액 기준이며 순수 교육비(등록금, 자기계발비, 학업생활보조비) 외 사업비도 포함

○ 변화(성과)지표5) (2018년도 기준)

| 목적                      | 목표                         | 지표/목표치  | 지표달성도  |
|-------------------------|----------------------------|---|--|
|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자립 도모 | 1. 학업유지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sup>6)</sup> 10점 이상 향상<br>- 자기개발 관련 활동 1인 1회 이상                         |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6점 향상<br>- 자기개발 관련 활동 1인 2회 이상   |
|                         | 2. 자립준비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도모 | - 프로그램 설문 만족도 4.0/5.0 이상<br>- 교육비 집행율 70% 이상<br>- 지역별 자치활동 2회 진행<br>- 모니터링 1인 각 2회 진행 | - 프로그램 설문 만족도 평균 4.67점<br>- 교육비 집행율 97% (1인 평균 약 388만원 지원(학비 9.4%, 자기개발비 63.9%, 학업생활보조비 27.2%))<br>- 지역별 자치활동 2회 진행<br>- 모니터링 1인 2회 이상 |

-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이 진행되면서 함께 변화된 보호(종료)아동 관련 정책

① 2015년 시도별 자립정착금<sup>7)</sup> 지원금액 상향조정,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 2013년 당시 아름다운재단 캠페인팀을 통해 양육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꿈>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생활하던 곳에서 퇴소해야 하고, 그때부터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주목함. 이에 보호종료아동이 퇴소하면서 지자체로부터 받는 자립정착금의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자립정착금 사용실태 및 자립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 캠페인 이후 민간의 요구가 반영되어 2015년 시도별 자립정착금 지원금액이 상향되고,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 지원이 확대됨<sup>8)</sup>

② 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sup>9)</sup> 지원 시행 :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5) 2018년도 지원사업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19년도부터는 성과목표 2. 역량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도모 변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립준비도, 사회적지지 척도 추가하여 지표측정 예정

6)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진로결정능력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

7)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만 18세에 달하였을 때,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어 원활한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 제도를 시행

8) 2015년도에 시도별 자립정착금은 공동생활가정이 64.7%에서 100%로, 가정위탁이 41.2%에서 76.5%로 크게 증가(양육시설은 100%). 또한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시도별 비율은 아동양육시설이 47.1%에서 64.7%로, 공동생활가정은 54.5%에서 64.7%로, 가정위탁은 37.5%에서 61.5%로 시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띠

9) 2019년 기준으로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

안정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자립수당 도입

○ 사업성과에 대한 인식<sup>10)</sup>

- 교육기회와 체험 격차 및 불평등 해소,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선택권 보장

심사위원 3 :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지원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공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자립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의 기회도 함께 제공되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자기계발 및 학업생활 보조는 당연히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어렵다고 기회에 있어서조차 차별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협력단체 사업담당자(2014년 - 2016년) : 국가장학금으로 학비를 모두 마련한다는 요즘 여전히 장학금의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대학 졸업장을 필수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와 대학 졸업장 외에도 많은 스펙들을 요구하는 환경 속에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란 친구들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져만 갑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혼자 온전히 자신만의 힘으로 준비해야하는 학생들은 밤낮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로 인해 성적관리는 점차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학금이 성적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성적관리가 안되어 장학금을 놓치게 되는 악순환은 이 친구들에게는 어쩌면 흔한 일 일지도 모릅니다. (중략)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에 좌절하려 할 때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학생 1(2014년) : 장학금을 받게 되어 학비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꿈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학업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던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장학생 2(2014년) :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이로 인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비 지원사업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장학생 3(2014년, 단기어학연수 지원자) :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서 좋았고, 등록금 외에도 학업생활보조비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학연수를 통해 느낀 점도 많았고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장학생 6(2015년) :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고 등록금을 전부 제가 부담해야했어요. 1학년 때는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야했었기에 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2학년이 되어서 교육비 지원을 받고나서는 아르바이트를 덜 하게 되었고 덕분에 제 시간

료된 아동 대상으로 매월 30만원 지급

10) 사업성과에 대한 인식은 2013년 ~ 2018년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작은변화 이야기(활동집)의 장학생, 사업담당자, 심사위원 대상의 인터뷰 내용 중 발췌하여 정리

을 많이 가질 수 있었어요. 저를 위해 투자한 시간을 통해 졸업 이후에 진로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었어요.

장학생 9(2015년, 자기계발프로젝트 지원자) : 최근에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 능력이 제자리인 것 같고 해서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 자기계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약기도 바꾸고 레슨도 받고 하니깐 많이 좋아졌어요. 다시 발전하는 느낌도 들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제 꿈의 첫 계단을 오른 것 같아요.

장학생 12(2016년) : 지난 학기 학점이 4.13이었다. 원래부터 학점이 좋았냐고 물어본다면 1학년 때 학점은 2.75였다. 일주일동안 안먹고 안자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장학금 꼭 받아야 하는 거야? 라고 묻기도 할 정도였다.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반대였다.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니) 학비 걱정 없이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에 모든 에너지를 학업에 쏟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학생 13(2016년) : 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으면서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자기계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자기계발을 하면서 장점을 더 높이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으며 학업생활보조비를 통해 전공 분야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생 14, (2016년, 자기계발프로젝트 지원자) : 자기계발 프로젝트는 배려와 존중이 깃든 프로그램 같아요. 엄마나 부모 같은 포근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게 됐어요.

장학생 15(2016년 - 2017년 연속지원, 2019년도 길잡이(선배장학생 활동) 참여) : 정말 절실한 순간에 교육비 지원을 받았어요. 국가장학금 지원이 되지 않아 학비를 벌기위해 휴학하고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모았죠. 그런데도 부족하더라고요. 다음 학기도 휴학할지, 징검다리 학교를 다녀야할지 고민할 때 교육비 지원이 결정된 거예요. 그때는 하늘이 천사를 보내준 것 같았어요. (교육비 지원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줄이는 대신 수업을 하나 더 들을 수 있었고, 교육비는 학비뿐 아니라 자기계발비, 학업생활보조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됐다. (중략) 제 이력서의 두세 줄은 교육비 덕분에 쓸 수 있었어요. 학업생활보조비를 통해 면접 때 필요한 정장도 구입할 수 있어서 취업 준비를 할 때 한결 마음이 편했어요.

장학생 16(2017년, 단기어학연수 지원자, 2019년도 길잡이(선배장학생 활동) 참여) : 캐나다에 가기 전까지 머뭇거리던 전과를 실행할 용기가 생겼어요. 그곳에서 문화를 배우며 의존적이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가능했어요. 지도를 보며 혼자 여행도 다니고 그러다 만난 사람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면서 두려움이 줄었죠. 무엇이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학생 17(2017년 - 2018년 연속지원, 2019년도 길잡이(선배장학생 활동) 참여) : 전공을 바꾼 터라 국가장학금을 4학기밖에 받을 수 없으니 나머지 4학기를 어떻게든 고민할 때였어요. 원에 계시던 선생님이 어떻게든 길이 있으니깐 걱정될 때 꼭

연락하러던 말씀이 떠올랐죠.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부랴부랴 지원하고 1년 동안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간호학과 공부) 제겐 정말 어려운 분야를 공부하니 따라가는 게 벅차거든요. 거기에 성적장학금을 고민하려니 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마음이 무겁고 다급했는데 다른 방법을 둘러볼 만큼 여유가 생겼어요. (중략) 작년 6월에 독립했으니 혼자 지낸지 1년 반인데 외롭고 힘들어요. 하하. 늘 급급하게 쓰니까 체계적인게 무의미했어요. 개념도 없죠. 운용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원금을 받으니 무엇에 써야 할지 효율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안경, 신발, 책이 그런 거예요.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1년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계획하는 거죠. 덕분에 쓰임을 체계적으로 생각하며 가계부도 쓰고(웃음). 반찬 사다가 집에서 밥도 해먹으려고요.

장학생 18(2017년 - 2018년 연속지원, 2019년도 길잡이(선배장학생 활동) 참여) : 교육비를 받아 서울에서 진행하는 타이포 관련 수업을 듣고 읽고 싶던 책을 샀죠. 유명 디자이너가 집필한 책, 사진집, 소설책... 보고 싶던 책을 잔뜩 사서 책장에 꽂아놓았어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요. 필요한 강좌와 책을 잔뜩 품으니 행복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졸업전시 비용 부담을 덜어내서였다. (디자인 전공자인 그에게) 회비 70만 원에 작품 제작비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부담스런 작업을 걱정 없이 치러내는 건 엄청난 행운이었다. 돈 때문에 구현하고픈 이미지를 덜어내거나 삭제하지 않아도 되니 절로 신이 났다. (중략) 비용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니 더 많은 시간을 작품에 투자할 수 있었다. 단 한 번의 지원이었지만 1%의 아쉬움도 없다. 적확하고 충분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도 자신과 같은 경험으로 충만해지길 바란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할 기회를 놓치지 않길 희망한다.

**- 현재의 성적보다는 사람(가능성)을 보는 선발제도, 고통을 드러내기 보다는 희망을 발굴하려는 관점 및 태도**

심사위원 3 : 아름다운재단의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다른 단체들과 달리 장학금 신청자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심사한다는 느낌보다 이들을 위해 뭘해야 할지를 우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 1 :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분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자 하는 밝은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위축됐던 신청자들도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에는) 달라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시각도 넓어진 것 같아요.

심사위원 2 : (심사를 하면서) 저도 늘 딜레마에 빠져요. 장학금을 받아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지원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반대로 되게 허술하게 쓴 서류를 보면 '이 사람은 맨날 떨어지겠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허술하게 쓴 서류

라고 해도 무슨 말을 쓰고 싶었을지 생각하면서 두 번 세 번 다시 읽어요. 서류 내용은 부실해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수 있거든요.

협력단체 사업담당자(2016년 - 현재) : 아름다운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을 안 봐요. 그래서 모집 기간 동안 질문도 많이 받아요. ‘저는 성적이 안 되는데 지원해도 되냐’고요. 사실 시설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은 성적이 잘 나오기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아예 지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주로 봐요. 슬픔이 아니라 희망을 보고 선발하는 거죠.

장학생 10(2015년) : 엄마가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다 우리는 빚을 갚아야했어요. 아무리 알바, 근로장학생을 해도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처음 장학생을 신청할 때 ‘이거 도움 못 받으면 진짜 대학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면접 보러 서울에 왔는데 어떤 면접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수고했다.” 이 한 마디에 우리 진짜 다 울었어요. 이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뭔가 마음이 몽클한 거예요.

장학생 21(2018년 - 2019년 연속지원, 2019년도 길잡이(선배장학생 활동) 참여) : 다른 곳은 성적 비율이 높고 활동 포트폴리오도 중요하게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매우 강하게 비판했다. 사람이 아니라 결과물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많이 배운 사람이 성적도 잘 받는 거죠. 정작 장학생이 필요한 저희들은 사교육도 못 받는데, 다른 애들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 저희들이 성적이 좀 낮다고 해서 ‘학업태도가 불량하다’고 예단하면 안되죠. 그런데 아름다운재단은 정말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고 독려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공평한 거예요.

#### - 지원대상자 중심에서 바라보는 사업적 관점

심사위원 1 : 아름다운재단은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장학생들을 많이 존중한다고 봐요.

심사위원 2 : 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들도 라이프 스타일과 생각, 욕구가 다양해요. 아름다운재단은 이런 상황을 잘 포착하고 있어요.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심사위원 3 : 아름다운재단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즉 당사자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도 남다르고요.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장학생 7(2015년) :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마치 인생의 행운 같았어요. 크게는 학비부터 작게는 교재비나 통신비처럼 눈에 띄지 않는 부분도 헤아려주고요.

#### - 장학생 간 지지체계 형성을 돕는 사업적 장치 마련

협력단체 사업담당자(2016년 - 현재) : (장학생 간 지지체계 형성을 돕는 동아리 활동과 지역별 모임 등의 자치활동 지원에 대해) 서로 많이 끈끈해요. 다른 친구들에게 못하는 이야기도 쉽게 나누고요. 장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상황에 익숙하거든요. 자신이 시설에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고, ‘너 진짜 부모님 안 계서?’ 그런 질문도 받고...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편하게 자신을 오픈하기 어려운 거죠.

장학생 4(2014년) : 장학생 MT와 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을 만나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장학생 8(2015년) : 자치활동을 포함해서 장학생들과 모이는 순간은 저에게 항상 전환점이 되더라고요.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학생들끼리 깊숙이 교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더 늘어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장학생 9(2015년) :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도 약간의 벽이 있었는데요. 우리끼린 속사정과 속마음을 유감없이 나눌 수 있었어요. 엄청나게 시원했죠.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나 기타 지원 내용도 공유할 수 있고, 큰 도움이 되었어요.

장학생 10(2015년) :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작년 여름 장학생들과 함께 MT 갔던게 기억에 남아요. 정말 좋았었어요. 그리고 저랑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던 것. 제 주변에는 자립에 실패한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에 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을 만난 것이 참 특별했던 것 같아요.

장학생 12(2016년) : 교육비 지원사업의 OT나 자치활동은 무척 감명 깊죠. 비슷한 환경의 또래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유익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날만큼은 편안히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고, 서로에게 선한 자극과 포근한 위로도 주고받을 수 있죠.

장학생 22(2018년 - 2019년 연속지원) : 다른 곳은 금전적 요소만 해결하는데 아름다운재단은 저희의 외로움에도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솔직히 시설에서 나온 사람들이 되게 외롭거든요. 그런데 같은 상황인 친구들과 어울리면 서로 이해하게 되고 엄청 힘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서로 교류하면서 그런 정보도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장학생 19(2017년 - 2018년 연속지원 장학생, 2019년도 길잡이(선배장학생 활동) 참여) : 사실 자조모임 같은 것에 부정적이었어요. 소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불평 불만만 얘기하다 결국 자포자기와 푸념으로 얘기를 끝맺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자치활동은 달랐어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 오면 일단 배울 게 많았어요.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줘요.

- 나눔 선순환

장학생 5(2014년, 2019년도 길잡이(선배장학생 활동) 참여 : 지원 받으면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나눔이라는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게 됐고요. 자신의 고통스런 인생을 보상하려고 스스로를 채우기보단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는지 저는 경험하게 됐으니깐요. 지원이 종료된 2016년 3월과 9월, 다른 지원 대상자와 함께 ‘나눔의 집’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중략) 지원 받은 후 달라진 게 있다면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는 자각이에요.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후배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기획홍보단 활동(바람개비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한 이유죠. 이미 경험한 자립의 노하우를 이제 경험할 사람과 나누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경험으로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되는 걸 앞선 누군가 알려주면 덜 막막할 것 같거든요. 제각각 저마다의 정보를 아낌없이 나누는 공간이 제게 또 다른 꿈을 품게 만들어요.

장학생 8(2015년) : 열심히 공부해서 자리 잡고 남들한테 베풀려고 해요. 사실 예전에 한 아동을 후원했는데요. 그조차 쉽지 않아 도중에 그만뒀거든요. 그때 작게라도 베풀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장학생 10(2015년) : 저는 세계를 오가면서 외국인 바이어를 상대하고 싶어요.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뭐가 됐던 저는 이제껏 도움을 받은 만큼 나눔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장학생 20(2017년 - 2018년도 연속지원, 2019년도 길잡이(선배장학생 활동), 2018년도부터 아름다운재단 정기기부자) : 아름다운재단은 ○○씨가 참 존경하는 김군자 할머니가 기부를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그는 마침 올해 김군자 할머니에 대한 영상을 봤다. 그 전에도 할머니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영상은 그에게 다시 한번 감동을 주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한 많은 평생을 보내면서도 많은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해주신 할머니의 삶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저는 장학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회를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중략) 그리고 모두들 성공해서 꿈을 이룬 다음에는 꼭 기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 3. 작은변화이야기

#### 수도권조 자치활동<sup>11)</sup> 장학생 인터뷰

#### 좋은 인연이 데려온, 좋은 바람

11) 장학생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사업 일환으로 6~10명의 장학생으로 구성된 지역별 자치활동 연 4회 진행. 지역별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2019년 현재 주제별 팀모임의 작은변화프로젝트 진행 중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하는 평행선, 언제나 내 말에 귀기우일 준비가 된 내 편, 넘어졌을 때 잡아 줄 손을 기꺼이 내어주는 이를 우리는 ‘친구’라 한다. 친구는 인생의 긴 길을 같이 걷는 동반자이자 러닝메이트. 그렇기에 오래된 친구일수록 더욱 그 진가가 빛을 발하게 된다. 그리고 자치활동은 지금 좋은 친구로 발효되는 중이다.

## 우리들은 ‘절친’

만나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얘기하느라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지는 수도권 지역 자치활동 김○○, 박○○, 백○○, 석○○, 손○○ 장학생은 지난해 지역별 모임으로 만나 올해도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사실, 첫 만남은 조금 어색했다. 자치활동은 장학생들끼리 소통하고 공감하는 모임이지만 마음을 나누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자치활동을 지속하면서 이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

“지역별 자치활동 모임이 동아리 활동으로 형식은 바뀌었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구성원은 거의 그대로죠. 지역별 모임은 물리적 거리가 가까웠다면 동아리 모임은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친구를 만나는 느낌이에요. 지금은 서로 너무 친해져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는 거 같아요.” 마음 맞는 친구들과 2년째 만나다보니 자치활동은 서로의 이성 친구도 알고 지낼 만큼 막역한 친구 모임이 됐다고 한다. 자치활동 2기로 지난해 참여했던 손○○ 장학생은 지원기간이 종료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친구 사이는 기간 종료도 따르지 않기 때문일테다. “사실, 자조 모임 같은 것에 부정적이었어요. 소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불평불만만 얘기하다 결국 자포자기와 푸념으로 얘기를 끝맺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자치활동은 달랐어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 오면 일단 배울 게 많았어요.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줘요.”

자치활동에서 장학생들은 일상의 이야기를 묻고 나눈다. 안부를 묻다 자연스럽게 공부와 취업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각종 지원 프로그램 신청과 방법을 묻기도 하고, 자격증 시험 정보도 나눈다. 시시콜콜한 일상이지만 치열하게 살아가는 서로의 모습에 자극을 받기도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에 용기를 얻기도 한다. 한 마디로 울면서 만나도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는 ‘절친’이 된 것이다.

## ‘우리’라는 이름의 추억

올해 여름에는 가평으로 수상레포츠를 즐기는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 바나나보트, 플라이피시 등을 즐기며 물놀이하고, 저녁으로는 삼겹살 파티를 했던 기억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았던 장학생들에게 가평 여행은 일상의 긴장을 풀고, 친진난 만한 청춘이 되어 여름을 만끽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날씨도 덥고, 화장해서 물놀이하기 딱 좋은 날씨였어요. 제가 물 공포증이 있어서 물을 안 좋아하는데 우리 중에 라이프가드 자격증 가진 친구가 2명이나 있어서 걱정 없었죠. 예산이 많진 않아도 계획을 잘 세워서 알뜰하게 놀았던 거 같아요.”

여름의 햇살만큼이나 눈부신 시간을 보낸 자치활동 수도권 조는 여행을 기억하는 이유가 또 하

나 있다. 그것은 저녁에 치열(?)하게 벌어졌던 ‘아웃팅’ 논쟁이다. 취업을 앞둔 장학생들이 성장 배경을 주변에 얘기할 것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다. 모두 한 번쯤은 망설이고, 고민했던 문제였기에 각각의 입장과 견해는 분명했다. 오랫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눈 끝에 내린 결론은 ‘그럴 수 있다’였다. 조금은 허무한 결론일 것 수 있지만 옳고, 그르코의 문제가 아니기에 편견 없이 서로의 생각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설픈 타협점이나 결론을 내리기보단 나와 다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의 범주를 넓힌 것이다. 그럴싸한 활동 내용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지만 자치활동은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공유하며 서로를 현명하고 단단하게 성장시켰다.

### 그렇게 어른이 된다

“최근에 생일날 남자친구가 미역국을 안 챙겨줘서 싸웠어요. 저희한테는 생일날 먹는 미역국의 미가 남다르거든요. 자치활동에서 만난 친구라면 바로 공감할 수 있는데 학교 친구나 다른 곳에서 만난 친구들은 잘 이해 못하더라고요.”

“내가 시설에서 자랐다고 말하면 주변에서 더 미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어요. 나 때문에 분위기를 무겁게 만든 것 같아 어색하고 부담돼요.”

“서로의 환경과 상황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니깐 조언을 들어도 마음을 열고 듣게 되요.”

“난 여기서 마음이 더 넓어졌어요. 원래 남을 잘 안 챙겼는데 자치활동에서 주변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나도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장학생들은 자치활동의 가장 큰 장점으로 편안함을 꼽는다. 이해와 공감의 깊이가 남다른 감정적 연대감은 평소 꺼내지 못한 이야기도 쉽게 꺼내게 한다. 남들에게 조금 치사하고 유치해 보일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마음에 맺혀있던 이야기도 자치활동에서라면 괜찮다는 걸 서로 알고 있다. 그리고 자치활동만의 편안함과 소통은 의외로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다. 현재에 지치지 않을 긍정성과 용기를 얻었고, 과거의 일로 웅이진 마음은 조금씩 풀렸다.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깨닫기도 했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자치활동은 이렇게 서로를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었다. 그리고 자치활동을 통해 장학생들은 의젓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어른이란 두려움 없이 나와 타인의 마음에 난 생채기를 들여다보며 따뜻하게 보듬는 여유를 갖는다는 의미일 테다. 또한 자치활동의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삶을 함께 하는 친구이자 서로의 든든한 배경으로서 말이다.

## 지원종결 장학생 자립이야기

### 기회와 인연의 끈으로 직조한 오늘

#### 의도하지 않은 ‘빅피처’

“저 일하고 있어요!”

쌀쌀한 가을 날씨를 찜하는 상쾌한 인사가 날아왔다. 대학 졸업 후 이듬해 1월 취업해 벌써 직장생활 9개월을 지나고 있는 김○○씨. 그녀에게 ‘직장인’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진 것이다.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새로운 길에 들어선 그녀는 여전히 씩씩하고 명랑한 모습 그대로다. 주변 분위기와 사람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특유의 에너지도 여전했다.

“대학 때 실습하는 곳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알게 된 후 다른 일은 생각도 안 했어요. 다행히 처음부터 제가 원했던 곳에서 일하게 돼 지금 신나게 일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사회복지와 법학을 복수 전공했는데 지금 하는 일에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첫 눈에 반하듯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알게 된 후 아동보호 일을 하겠다 목표를 정했고,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그녀의 뜻은 이뤄졌다. 물론 대학 입학 전부터 큰 뜻을 갖고 그녀가 사회복지를 전공한 것은 아니었다. 경영학과 사회복지 중 자신이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전공을 선택했던 것뿐이었다. 공부하면서 전공이 자신과 잘 맞는 것을 확신했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생겼다.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바빴지만 법학을 복수 전공하기로 한 것도 그래서다.

사회복지와 법은 서로 멀리 있지 않았다. 수업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아 대학 생활 내내 학비와 생활비, 아르바이트로 동동거리며 지내야 했다. 하지만 아동보호 일을 시작한 뒤로 그녀는 새삼 법학을 공부하길 잘했다고 깨닫는 중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법률적 지식이 크게 도움을 받는 까닭이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와 법학의 복수 전공은 아동보호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한 큰 그림으로 느껴질 정도로 말이다.

### 치열했던 나의 대학생생활

“정말 절실한 순간에 교육비 지원을 받았어요. 국가장학금 지원이 되지 않아 학비를 벌기위해 휴학하고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모았죠. 그런데도 부족하더라고요. 다음 학기도 휴학할지, 징검다리 학교를 다녀야 할지 고민할 때 교육비 지원이 결정된 거예요. 그때는 하늘이 천사를 보내준 거 같았어요.”

PC방과 과외를 두 개씩 하고, 주말에는 레고 블록 조립 아르바이트를 해도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하기엔 빠듯했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인데, 어느 순간 돈 버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는 아이러니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해본 적 없었지만 그 순간에는 원망이 쏟아졌다는 그녀. 때마침 결정된 교육비 지원은 휘청이는 그녀의 마음까지 다잡아줬다. 본래의 명랑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는 또 다시 바지런히 움직였다. 아르바이트를 줄이는 대신 수업을 하나 더 들을 수 있었고, 교육비는 학비뿐 아니라 자기계발비, 학비생활보조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됐다.

“제 이력서의 두세 줄은 교육비 덕분에 쓸 수 있었어요. 학업생활보조비를 통해 면접 때 필요한 정장도 구입할 수 있어서 취업 준비를 할 때 한결 마음이 편했어요. 취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정장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대역도 가능하지만 면접이 여러 번이면 부담되긴 마찬가지고요.”

누구보다 치열했던 대학생생활과 목표로 삼았던 기관의 취업 활동, 어려서부터 조금씩 꿈꾸고 바랐던 대학 졸업도 어느새 추억이 됐다. 빨리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일하고 싶었던 어릴 적 소망

이 마침내 그녀의 일상이 된 것이다.

###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이 데려온 소중한 인연

민원 많고, 돌발적인 위기 상황도 많아 업계에선 일이 고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9개월째 일하고 있는 그녀는 요즘 업무와 일상을 구분 짓는 ‘스위치’를 자주 생각한다. 선의는 곡해되고, 평범한 말 한 마디가 소통 단절의 단초가 되는 등 마음고생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아직 업무 스위치가 잘 작동되지 않지만, 담당할 가정이 회복되고, 개선되는 모습은 그녀를 다시 움직이게 한다.

“위기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해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해야 하죠. 다만 한 사람의 인생에서 좋은 사람과 기회를 만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아니깐 일하면서 만나는 가정에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학비 부담을 덜어준 것에 안도했고, 꿈도 못 꿰던 단기어학 연수 기회를 갖게 된 것이 기뻐다. 자기계발비와 학업생활보조비로 운동과 문화생활을 할 때는 마음 어딘가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다. 동아리 친구들과 각출하고 지원금을 더해 떠난 여행은 모든 걱정을 날려버릴 만큼 유쾌하고 즐거웠다. 교육비 지원은 숨이 차오를 때까지 달리다 넘어졌을 때 그녀를 잡아준 손이었고, 조금 천천히 달려도 괜찮다며 다독여준 여유였던 것이다.

그리고 친구들... 교육비를 계기로 만난 이들은 어느새 그녀와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됐다. 무거운 마음도 쉽게 나눌 수 있는 친구이자 삶의 런닝메이트가 된 것이다.

자신이 담당하는 아동과 가정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인생의 기회와 인연을 만나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2016년부터 2년 간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장학생이었던 그녀가 졸업생으로서 후배들에게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과 함께 온 기회와 인연의 끈을 꼭 잡으라고. 부지런히 계획하고, 움직이고, 만나고, 즐기는 동안 그 끈들은 우리의 삶과 내일을 직조해낼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 심사위원 3인 그룹인터뷰

### 장학생들의 실패할 권리, 격렬히 응원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는 장학생들은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가장 큰 차별성은 바로 심사과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금의 성적은 보지 않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는 절차, 고통을 드러내기보다는 희망을 발굴하려는 태도가 아름다운재단만의 특성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 같은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심사 과정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서류만으로 점수를 매기고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신청자를 선정하면 훨씬 쉽겠지만, 아름다운재단의 심사 절차는 좀더 복잡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름다운재단 심사위원은 서류와 면접 심사를 모두 진행한다. 심사위원들끼리 서로의 관점과 생각을 논의하면서 심사 방향을 조율한다. 사업의 방향과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아름다운재단에 제안하기도 한다.

이 과정을 책임지는 심사위원들은 과연 이런 절차를 어떻게 느낄까? 어떤 마음으로 장학생들을 만나고 있으며,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떨까? 이 같은 궁금증을 두근두근 안고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심사위원들 3명을 한 자리에서 만났다.

## “허술한 신청서를 여러 번 읽는 이유는...”

**Q. 오랫동안 아름다운재단 장학생 심사에 참여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심사위원 3 :** 아름다운재단의 교육비 지원사업은 다른 단체들과 달리 장학금 신청자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심사한다라는 느낌보다 이들을 위해 뭘 해야 할지를 우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 1 :** 다른 사업을 심사하다보면 신청자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 눌러 우울하고 슬프고 때로는 화가 나있는 경우가 많아요. 심사하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착잡한 느낌이지요. 그런데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자 하는 밝은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위축됐던 신청자들도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에는) 달라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시각도 넓어진 것 같아요.

**심사위원 2 :** 7년 동안 심사를 했는데, 예전에 만났던 신청자들은 더 많이 우울해 했어요. 요즘에는 면접 보면서 웃고 나가기도 하죠. 사실 장학금 신청자는 대부분 자신의 사정이 어려워야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심사가 ‘어려움을 증명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질문을 해요. 면접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환하게 웃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찾아서 하곤 해요.

**Q.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심사위원 3 :** 저는 자신의 꿈이나 희망을 이야기하는 신청자를 만나게 되면 그 이야기에 더 매료되고, 지원하고 싶은 마음도 더 드는 것 같아요. 지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이야기 하는 눈빛만 봐도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심사위원 1 :** 어쩌면 이 장학금이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받을 마지막 지원이 아닐까 생각하면 고

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목적을 어떻게 이루려할건지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려 하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아름다운재단 장학금 아니면 다른 곳의 지원도 못 받을 것 같은 경우도 만나요. 그런 절실한 느낌도 좌우를 하죠. 사실 잘 하는 신청자는 꼭 아름다운재단이 아니라도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 세 명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심사위원 2 :** 저도 늘 딜레마에 빠져요. 장학금을 받아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지원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반대로 되게 허술하게 쓴 서류를 보면 ‘이 사람은 맨날 떨어지겠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허술하게 쓴 서류라고 해도 무슨 말을 쓰고 싶었는지 생각하면서 두번 세번 다시 읽어요. 서류 내용은 부실해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수도 있거든요.

**심사위원 3 :** 여러 장에 많은 내용을 작성한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도 막상 면접을 해보면 생각했던 것 보다 할 얘기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서류는 잘 못 썼어도 면접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는 면접자도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 1 :** 다른 곳은 심사위원들이 각자 채점을 해요. 점수 차이가 25점 이상일 경우만 조율하기도 하죠. 그렇게 총점을 계산해서 상위 점수부터 선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놓친 부분은 계속 못 보는 것이고, 그렇게 제가 점수를 낮게 줘서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이 탈락될 수도 있죠.

**심사위원 2 :** (다른 단체의 심사는) 심사점수를 입력한 엑셀 파일 내면 끝이죠.

**“등록금 이상을 지원 받으면 사치일까요?”**

**Q.최근 장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방향이 많이 바뀌었고, 아름다운재단도 등록금만이 아니라 자기계발비와 학업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심사위원 2 :**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발표가 났어요. 인구 절벽이니 앞으로는 대학 등록금까지 무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장학금을 써야 할 지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원금을 생활비로도 쓸 수 있고, 그 외에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공과금, 의료비, 면접에 대비한 비용이라든가 여가활동, 데이트 비용 등등... 사실은 돈이 없어 연애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심사위원 1 :** 2019년에 몇몇 대학의 경우 저희처럼 학업이나 생활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지원해요. 학업지원비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더라구요. 이미 그런 방향으로 사

회적 흐름이 시작된 것이죠.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금만이 아니라 부교재 구입비용이나 생활비가 충당돼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장학금은 대부분 성적을 기준으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재단만의 장학금 지급 기준이나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심사위원 3 :** 교육비지원사업은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지원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공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자립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의 기회도 함께 제공되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자기계발 및 학업생활 보조는 당연히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어렵다고 기회에 있어서조차 차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심사위원 2 :** 그렇다고 스펙 경쟁을 위한 지원은 오히려 사회적 차별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가 지금 청년들인데, 가장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취업을 위한 그 많은 스펙들이 사실은 불필요한 스펙인 경우도 많은데요. 장학생들이 스펙을 쌓기 위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경쟁의 출발선은 더 멀어지게 만들지 않을까요? 시간도 돈도 건강도 모두 잃어버리게 만드는 스펙전쟁... 제 생각엔 스펙을 쌓기 위한 지원이 아닌 고용 기준을 평등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한 낭비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되게 생계만을 위한 삶이 아닌 행복해지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과 함께 지금을 버티고 살아낼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니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재단은 현실적 지원과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경쟁의 과정을 바꾸기 위한 정책도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Q.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만의 장점과 가치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사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요?**

**심사위원 2 :** 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들도 라이프스타일과 생각, 욕구가 다양해요. 아름다운재단은 이런 상황을 잘 포착하고 있어요.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여기에 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지원받는 사람 입장에서 불필요한 서류가 없는지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지 잘 모니터링해서 최대한 간소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상황이 힘든 사람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데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우물에 갇힐 수 있거든요.

**심사위원 3 :** 아름다운재단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즉 당사자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도 남더라고요.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름다운재단이 다른 단체와도 협업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시너지가 더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생들이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사업과 연계되면 좋겠어요. 후배들에게 멘토링도 하고 영역별 기부자가 되기도 하면서요.

**심사위원 1 :** 아름다운재단은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장학생들을 많이 존중한다고 봐요. 장학금을 신청하시는 대학생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조금만 실수하면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심리적 단절감도 커요 아름다운재단 장학생들이 시행착오 과정에서 계속 응원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그래서 자신이 혼자라는 느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개선사항은요. 사람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자기존중감이 높아지거든요. 사업 안에 장학생들이 작게라도 사회나 친구들, 후배들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고 나눠주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먼저 손 내밀어 주세요.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Q. 마지막으로 아름다운재단 장학금에 지원하거나 이미 지원받는 청년들에게 응원 한 마디씩 부탁 드립니다.**

**심사위원 2 :** 모두들 행복하기 위해 살지만 사람마다 행복한 삶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그걸 생각할 기회가 없는데 지원을 받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긴다면 아니 그렇지 못하더라도 꼭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존엄성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해서도 인간의 존엄을 사 버릴 정도로 부유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요? 그래서 지금-여기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요구를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정책도 바뀌고, 이런 장학금이 사라져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 없을 자신의 독특한 삶을 향해 어렵더라도 꼭 나아가시길 바래요.

**심사위원 3 :** 오늘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지금 실수하고, 실패하여 좌절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희망을 가지면 미래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걸,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심사위원 1 :** 사실 저도 몇 번 실패나 좌절을 겪고 나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과연 될까’ 생각했어요. 선뜻 용기가 안나고 포기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반문하기 시작했어요. “왜 안돼?” “왜 꼭 이래야 하지?” 아름다운재단 장학생들도 자기자신이나 처한 상황에 대해, 그리고 사회에 대해 그렇게 계속 반문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돕겠지만, 그러려면 도와달라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가져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꼭 잡아 일으킬 수 있도록

### 얼마나 불쌍한지 묻지 않는다. 꿈을 보니까

아동자립지원단의 이○○ 주임은 지난 2016년부터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장학생을 모집하고 선발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모임과 행사를 조직하는 모든 일이 다 그의 업무이다.

이 기간 동안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큰 변화가 있었다. 국가장학금 확대에 따라 등록금 외 진로탐색이나 개인성장을 위한 자기계발비로 장학금의 용도를 확대한 것이다. 장학금은 1년에 총 400만원을 지원하는데 등록금과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비로 사용되며, 장학생은 이 중 30%까지를 학업생활보조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사업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장학생들이 직접 장학금을 지급받아서 등록금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학습에 자기계발비, 교재비 등을 사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장학금의 지급과 증빙, 관리 방식도 모두 기존과는 전혀 달라졌다.

장학생에게는 꼭 필요한 변화였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적응해야 하는 실무자는 매우 고단할 수밖에 없다. 이○○ 주임은 바로 최전선에서 이 변화를 온 몸으로 겪는 실무자이다.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고민과 노력도 그의 몫이다.

###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통해 꿈에 한발자국 더 다가가기를

이○○ 주임을 통해 지원을 받는 아름다운재단 장학생은 1년에 60명. 분기별로 10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그는 한 달에 한번씩 영수증을 제출 받으면서 장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 받는다. 상하반기에 1번씩은 직접 만나 밥을 먹으면서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고 일상 생활도 확인한다. 동료와 함께 나눠서 일한다고는 하지만 업무량은 만만치 않다.

특히 그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장학생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장학생은 쉽게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서지만, 이렇게 친밀하다가도 가끔씩은 관계가 끊긴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장학금을 잘못 사용해 연락을 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그는 매우 마음이 무겁다. 워낙 생활비가 빠듯하다 보니, 아주 가끔은 장학생들이 일단 급한 생활고 해결을 위해 교육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장학금의 취지에 맞지 않기에 환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담당자로서는 이렇게 난처할 데가 없다.

이토록 힘든 것이 장학생과의 관계이지만, 반대로 그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 역시 장학생과의 관계이다. 이○○ 주임은 “이메일 주고 받는데 마지막 한 줄에 ‘선생님 감사해요’라고 적혀 있으면, 그런 말에 다시 기운이 난다”고 말했다. 그 맛에 계속 이 일을 하는 거라고.

마침 그는 예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 날 만난 장학생에게 전해받은 것이다. 다른 장학생이 오래 전에 만들었는데 이제야 전달받았다고 한다. 상자 안에는 작은 액자가 있었다. “○○ 쌤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이다”라는 캘리그라피 문구를 예쁜 꽃과 꼬마전구가 둘러싼 작품이다. 상자에는 정성스러운 메모도 들어있다. “쌤, 이제서야 선물을 보내요. 좀 더 빨리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더 신경+정성을 쏟느라 많이 늦어졌네요. ㅎㅎ 그래도 100% 핸드메이드로 엄청X100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많이 기뻐해주세요!!” 선물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가득하다. 웃는 것도 같고 우는 것도 같은 복잡한 표정이지만 행복한 것은 확실하다. 이○○ 주임의 또다른 주요 업무는 장학생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조직하고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일이다. 아름다운재단의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비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장학생들의 관계도 함께 지원한다.

아름다운재단 장학생들이 모여서 교류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사는 OT와 MT, 홈커밍데이이다. 이와 함께 동아리 활동과 지역별 모임 등의 자치활동도 지원한다. 행사는 이○○ 주임이 직접 기획하지만, 자치활동은 장학생들이 직접 기획해 운영한다. 일종의 자조모임인 셈이다.

“서로 많이 끈끈해요. 다른 친구들에게 못하는 이야기도 쉽게 나누고요. 장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상황에 익숙하거든요. 자신이 시설에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고, ‘너 진짜 부모님 안 계셔?’ 그런 질문도 받고...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편하게 자신을 오픈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는 참 품이 많이 든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어울릴 수 있어야 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즐거워야 하고, 그러면서도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이 어려운 업무에서도 그에게 힘을 주는 것은 역시 장학생들이다. 그는 “MT에 다녀오면 장학생들 카톡 프사가 모두 MT 사진으로 바뀐다”며 자랑스러워 했다.

### 아름다운재단이 바라는 성과는 다릅니다

지난해 아름다운재단이 사업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꾼 것은 사회 흐름에 발맞춘 변화이다. 최근 장학사업의 가장 큰 흐름은 자기계발이다. 국가장학금 지원이 늘어나면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늘어났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학 생활 내내 각종 스펙을 쌓아야 하는 현실에서 장학생들에게도 더 많은 자기계발이 필요해진 것이다.

사업 방식은 새로워졌지만, 아름다운재단만의 특성은 놓치지 않았다. 이○○ 주임은 “아름다운재단은 큰 성과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성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양적 성과에만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아름다운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을 안 봐요. 그래서 모집 기간 동안 질문도 많이 받아요. ‘저는 성적이 안 되는데 지원해도 되냐’고요. 사실 시설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은 성적이 잘 나오기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아예 지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주로 봐요. 슬픔이 아니라 희망을 보고 선발하는 거죠.”

앞으로도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이런 기본방향을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더욱 세밀한 지원을 위해 끊임없이 사업을 개선해나갈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사업이 일부 달라진다. 우선 학업생활보조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영수증 증빙에서 제외시킨다. 장학생들의 편의를 신경 쓴 것이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의 강점인 자치활동을 강화한다. 장학생들의 자치활동 횟수를 늘리고 선배 장학생들과 장학생들과 만나는 자리도 더 많이 만들 예정이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사업은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아름다운재단과 이○○ 주임은 꾸준히 장학생들과 함께 울고 웃을 것이다. 그렇게 더 안전한 울타리가 되고 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 주임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아름다운재단 장학생과 예비 장학생에게 이렇게 응원과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다.

“장학금을 신청할 때 지원서에 본인의 꿈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기 어렵고 꿈도 계속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부디 그 꿈을 잊지 않고 꼭 이루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들 때는 언제든 좋으니 편하게 연락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들 고마워요!”

## II. 시설폐소 및 위탁종료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2016년 - 2018년)

### 1. 지원사업의 전개 및 확충 과정

#### 1) 사업 시작 배경

- 2013년 양육시설 폐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꿈>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서부터 보호종료아동들의 현실에 주목함
-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보호종료아동이 퇴소하면서 지자체로부터 받는 자립정착금의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자립정착금 사용실태 및 자립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 해당 연구에서 자립정착금의 42.3%가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지불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함. 주거는 초기정착 시 자립의 기반이 되는 가장 우선적인 자원이며 표준화된 자립정착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음
- 캠페인 이후 민간의 요구가 반영되어 2015년 시도별 자립정착금 지원금액이 상향되고,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 지원이 확대되었음. 하지만 자립기반 마련과 직결된 주거 지원이 현실화 되었다 하기에는 어려웠음. 대학졸업 또는 군입대 등으로 취업 가능한 연령이 평균 만 24세 이상이고, 청년 취업난 등으로 자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거지원 정책 상 연령 제한(LH임대주택 지원대상자 연령 만 23세)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음을 확인
- 2016년 아름다운재단과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시키고자 대상을 만 28세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아동복지시설 폐소 및 위탁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3년 사업을 기획

####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실질적 주거비 지원을 통한 빈곤층 전락방지 및 자립기반 마련, 주거관련 교육제공을 통한 자립역량강화 및 자립안정망 마련
-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28세 이하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지원내용** ※연도별 상이
  - 1인 최대 500만원 주거비(전월세 보증금, 월세, 기숙사, 고시원 등 직접주거비 및 관리비)
  - 자립역량강화 교육(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법, 주거환경관리 등), 재무상담(재무기초교육 및 상담), 반찬두레활동, 사례관리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주거환경 모니터링(사례관리)
  - 조사연구를 통한 지원기반 마련 사업

| 프로세스            | 내용   |
|-----------------|--|
| 대상자 선발          | 홍보모집 ▶ 서류접수 ▶ 적격여부 검토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최종 합격 ▶ 주거비 지원   |
| 오리엔테이션          | <p>보호종료아동 및 사례관리자 대상 오리엔테이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종료아동 대상 지원사업 안내, 주거관리 교육</li> <li>- 사례관리자 대상 지원사업 안내, 사례관리 교육 등</li> </ul>  |
| 주거비 지원          | <p>연중 1인 최대 500만원 이내 주거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월세 보증금, 월세, 기숙사, 고시원(원룸텔) 등 직접주거비(관리비 포함, 단, 전기세, 도시가스비 제외)</li> </ul>   |
| 자립역량강화교육        | <p>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역량강화교육 ※ 연도별 상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관련법 교육,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부동산 잘 찾기 등의 주거 관리교육, 재무기초교육 및 재무전문가 연계를 통한 개별상담, 주거 환경교육, 반찬두레활동 등</li> <li>- 연 3회 이상 진행</li> </ul>                              |
| 주거환경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 <p>주거환경모니터링 및 사례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환경모니터링 주거지 점검 진행, 1인당 1회 필수 진행</li> <li>- 전화 및 대면상담(방문 또는 내방) 사례관리 실시, SNS 활용한 가계부 활용실태 점검 및 사례관리</li> </ul> <p>※수행단체(사례관리기관) 및 협력단체(아동권리보장원) 직접 사례관리 동시 진행</p>  |
| 연구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년도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제도 개선 위한 주거권 실태조사</li> <li>- 2차년도 : 선진국 사례조사를 통한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제도 동향연구, 주거환경 모니터링 매뉴얼 개발</li> <li>- 3차년도 : 3차년 사업효과성 성과평가 (온라인 설문조사, 지원대상자, 사례관리자, 심사위원 인터뷰 조사)</li> </ul> |

### 3) 연도별 주요 진행 내용

| 구분    | 주거비 지원  | 자립역량강화교육  | 주거환경모니터링<br>및 사례관리                   | 조사연구  |
|-------|---|---|--------------------------------------|---|
| 2016년 | - 1년간 주거비 1인 최대 500만원 지원<br>- 총 110명 지원<br>- 1인 평균 4,411,313원 지원  | - 주거관리교육 연 2회<br>- 재무교육 연 2회<br>- 재무상담 1인당 3회<br>- 반찬두레활동 연 2회  | - 주거환경 모니터링 1회<br>- 사례관리 월 1회        |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제도 개선 위한 주거권 실태조사                          |
| 2017년 | - 1년간 주거비 1인 최대 500만원 지원<br>- 총 82명 지원<br>- 1인 평균 4,850,933원 지원   | - 주택임대차법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교육 1회<br>- 재무관리교육 연 1회<br>- 주거환경관리교육 연 1회 | - 주거환경 모니터링(대면, 전화, SNS) 1인 최대 3회 실시 | - 선진국 사례조사를 통한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제도 동향연구<br>- 주거환경 모니터링 매뉴얼 개발 |
| 2018년 | - 1년간 주거비 1인 최대 500만원 지원<br>- 총 44명 지원<br>- 1인 평균 397,776,540원 지원 | - 주거법 교육 연 2회<br>- 재무상담 교육 연 1회<br>- 주거환경관리교육 연 2회              | - 주거환경 모니터링(대면, 전화, SNS) 1인 최대 3회 실시 | - 3차년 사업효과성 성과평가  |

※ 2017년 'KBS 시사기획 창' '열여덟, 보호종료' 방송 보도 1건

## 2. 지원사업 작은변화(성과)

### ○ 지원현황

- 2016년 ~ 2018년 누적 선정인원 총 236명, 총 지원금액 1,449,158,574원<sup>12)</sup>
- 직접 주거비 지원 1,083,841,948원  
(1인당 최대 500만원, 1인당 평균 지원금액 4,592,551원)
- 연도별 지원사업 신청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지원 수요를 볼 수 있음(2016년 1.15 : 1, 2017년 2.3 : 1, 2018년 2.5 : 1)

12) 지원금액의 경우 결산액 기준이며 직접적 주거비(전월세보증금, 월세,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 직접주거비 및 관리비 지원) 외 사업비 포함

○ 변화(성과)지표 (2016년 - 2018년) ※연도별 지표치 상이

| 목적   | 목표                                       | 지표/목표치  | 지표달성도   |
|--|--|---|---|
| 1. 실질적 주거비 지원을 통한 빈곤층 전락 방지 및 자립기반 마련<br>2. 주거 관련 교육 제공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및 자립안정기 마련 | 1.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성 도모         | - 주거비 지원 3년 기준 220명<br>- 1인당 최대 500만원 직접 주거비 지원   | - 주거비 지원 3년 기준 236명<br>- 1인 평균 지원금 4,592,551원   |
|  | 2. 자립역량교육, 주거환경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를 통한 주거안정기 형성 | - 자기기입식 설문만족도 4.0 이상(5점 만점)<br>- 주거관리교육 연 2회 이상<br>- 재무교육 연 1회 이상 *1차년도 재무상담 1인당 3회, 반찬두레활동 연 2회<br>- 사례관리 월 1회     | - 주거관련 자립역량강화교육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4.3점 → 4.3점 → 4.7점)<br>- 주거관리교육(4회 → 4회 → 3회)<br>- 재무교육(4회 → 1회 → 1회) *1차년도 재무상담 1인당 3회, 반찬두레활동 연 2회 진행<br>- 사례관리 월 1회                          |
|  | 3. 효율적인 주거지원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1차년도(2016년)<br>- 연구보고서 발간 1건<br>2차년도(2017년)<br>- 연구보고서 발간 1건<br>- 주거환경모니터링 매뉴얼 제작 1건<br>3차년도(2018년)<br>- 성과평가보고서 1건 | 1차년도(2016년)<br>-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제도 개선 위한 주거권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완료<br>2차년도(2017년)<br>- 선진국 사례조사를 통한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제도 동향연구 발간 완료<br>- 주거환경모니터링 매뉴얼 제작 완료<br>3차년도(2018년)<br>- 성과평가보고서 발간 완료 |

- 시설퇴소 및 위탁종료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진행되면서 함께 변화된 보호(종료)아동 관련 주거 정책

① LH의 소년소녀 등 전세주택지원제도 지원대상자의 범위 확대 : 본 사업 시작 시점 대상요건은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한 자 및 퇴소하는 자로서 만 23세 이하인 자였음. 이는 보호종결아동 중 연장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LH전세주택 지원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sup>13)</sup>,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은

13)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의 경우 23세까지 LH전세주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은 23세에 달하기 6개

LH전세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음. 이후 2017년 만 23세 이하인 자에서 보호종료 후 5년까지로 연령에 대한 요건이 연장되었으며,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까지 지원 확대됨

② 아동복지시설장 및 아동자립지원단장 추천 절차 폐지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생활하던 시설장의 추천 또는 아동자립지원단의 추천이 필요했음. 하지만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보호확인서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됨

③ 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사례관리 정부 시범사업 시작 :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협업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보유의 약 240호 주택을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제공하는 사업 2019년도 시행. 또한 아동 개인별 특성·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자립 성공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19년에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며, 사업성과 등을 토대로 단계적 확대 추진 예정

○ 사업성과에 대한 인식<sup>14)</sup>

- 실질적 주거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자립기반 도모

지원대상자 1(2016년) : “시설퇴소아동에게 주거는 생존 그 자체임을 더 생생하게 느끼고 있어요. 주거안정 지원사업과 뜻을 같이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듯 시설퇴소아동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발판삼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지원대상자 2(2017년) : “시설퇴소 후 행복했던 순간이 없었어요. 자립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생각보다 세상이 혹독하더라고요. 음식점 서빙, 막노동 보조, 에어컨 설치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죠. 하지만 성격이 내성적이라며 사흘 만에 해고당하기도 했고, 부당한 계산법으로 급여가 깎이기도 했어요.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들이었어요.” 무엇보다 ○○씨를 힘들게 한 건 주거지 문제였다. 그는 시설퇴소 후 고시원에 머물렀다. 그러나 고시원이 불법 구조물로 폐쇄 명령이 떨어지면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다. 가진 돈으로는 마땅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 현수씨는 노숙인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중략)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만난 분들이 아니었다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그림을 다시 시작할 용기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지원대상자 3(2018년) : “LPG 가스를 이용하는 곳이라 난방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최소 생활비로 사는 저에겐 큰일이었죠. 보일러를 켤 수가 없었어요. 입김이 나올 정도

월 전까지 가능

14) 사업성과에 대한 인식은 2018년 시설퇴소 및 위탁종료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조사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3차년도 사업효과성 성과평가 시 진행된 지원대상자, 사례관리자, 심사위원 대상의 인터뷰 내용 중 발췌하여 정리

로 추운 날이 계속되자 집주인이 전기장판을 주시기도 했지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혹한이 찾아온 날이면 교회 집사님의 집에서 지내며 긴 겨울을 버텼어요.” 지원대상자 선정이 결정되자 ○○씨는 다섯 번째 집을 구하러 나섰다. 추위만 제대로 피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다. (중략) “러브하우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게는 지금 사는 집이 그런 곳이에요. 주거안정 지원사업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배운 좋은 집 구하기에 딱 들어맞는 곳이죠. 냉난방 걱정 없고 햇볕도 잘 들고 깨끗하거든요. 몸만 편하게 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상상이상이에요. (시설퇴소 및 위탁종료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미친 영향은 쾌적한 주거환경 뿐 아니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지원대상자 4(2018년) :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야 했는데 자금이 부족했어요. 대학원에 오면서 기초생활수급이 끊긴데다 국가에서 받은 디딤씨앗통장에도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급한 대로 디딤씨앗통장을 보증금으로 걸고 여러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월세를 충당했습니다. 시간을 쪼개어 생활할 수 밖에 없었어요. 잠은 나중에 자는 거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시설퇴소 및 위탁종료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선정은 ○○씨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보증금을 내고 맡겨둔 디딤씨앗통장을 찾아 일본어 학원에 등록하고 영어 공부도 시작했다. 아르바이트도 무리하지 않는 선까지 정리하고 학업과 취업준비를 하는데 충분히 투자했다. “주거에 안정감이 생기니까 목표가 더 뚜렷해졌어요. 2시간이던 공부시간이 5시간까지 늘어났고 계획대로 생활하게 되니 추진력이 생기더라고요. 일본어 자격증 취득을 시작으로 일본기업 공채에 도전했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심사위원 1 : 다수의 주거지원 사업들은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이 원하는 생활권이나 주거의 형태와는 거리가 멀어요. 교통이 불편한 변두리에 위치해 있거나 낯선 이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아동들의 호응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아동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월세를 가리지 않고 지원금 한도 내에서 아동들이 원하는 곳에 살 수 있게 했어요.

#### - 주거관련 교육제공을 통한 자립역량강화

지원대상자 1(2016년) :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배운 게 많아요. 특히, 자립역량강화 부동산 관련 교육은 정말 유용했죠. 보호자 없이 혼자 집을 구하다 보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보증금을 떼이기도 하고 계약이 끝나기 전에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조항들을 알게 되니까 집 구할 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독립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도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지원대상자 3(2018년) : “주거안정 지원사업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해 재무상담을 받았어요. 생활에 꼭 필요한 금액을 알게 되니 다음 지출도 계획할 수 있게 되었

어요. 작게나마 저축도 시작했고요. 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생생하게 느꼈어요. 어둠을 비추는 빛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도움 받은 만큼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제게 선물이 되어준 것처럼 말이에요.”

사례관리자 1 : ○○군은 다른 지원 사업에 떨어지고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선정된 케이스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도움이 꼭 필요한 친구가 지원을 받게 되어 담당자 입장에서든 매우 기뻐합니다.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을 받았는데 지원금을 짜임새 있게 사용하는 법과 LH 전세주택에 관해 알 수 있어서 유용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다며 말이지요.

#### - 주거환경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를 통한 자립안정망 마련

지원대상자 5(2018년) : “보증금을 모아서 답답한 고시원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빚 때문에 뜻하지 않게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보이 스피싱이었어요. 다른 곳에서 돈을 다시 빌렸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더니 가압류까지 들어오더라고요. 혼자 감당하기에 벅찬 시간들이었어요.”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씨는 돈이 생기는 대로 빚을 갚았고 특별채무감면으로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평균 30만원씩 나가는 고시원 월세가 큰 부담이었다. (시설퇴소 및 위탁종료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간절히 원했던 나만의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싱크대, 화장실이 있는 원룸이죠. 방을 구할 때 아동자립지원단에 이것저것 많이 묻고 귀찮게 했는데 늘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는데 의지할 곳이 생기니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중략) “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LH 전세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었거든요. 불과 1년 동안 제 삶이 너무 많이 변해 얼떨떨할 정도예요. 오래 살 수 있는 집이 생겼으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아동자립지원단에서 모니터링 오셨을 때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요. 이제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평범한 말이지만 제겐 큰 위로와 의지가 되었어요. 그 말처럼 된 것 같아 정말 행복해요.”

사례관리자 2 : 16년도부터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얻은 소득이 있습니다. 월세로 지원금을 받는 아이들의 경우 매달 방세를 내고 지급영수증을 보내주면 지원금을 보내주는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자연스럽게 지불에 대한 개념, 규칙적인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독립에 있어 자기조절은 필수잖아요. 월세를 약속한 날에 맞춰내야 하고, 이를 위해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어디서든 쉽게 배울 수 없는 공부지요. 이 사업 이후에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리라 생각해요.

사례관리자 3 : 무엇보다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있어 아이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독립을 준비할 수 있어 감사했어요. 퇴소 이후 자립정착금과 디딤씨앗통장을 모두 사용해 버린 아동의 경우 주거비나 생활비가 급할 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굉장히 유용했던 것이 자립정착금과 디딤씨앗통장 사이의 징검다리가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주거비를 해결해 디딤씨앗통장을 아끼고 퇴소아동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벌 수 있었죠. 3년간 아이들에게 따뜻한 집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했고, 제2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례관리자 4 : 보호가 종료된 가정위탁아동은 5년 동안 평가대상이 되는데 자립전담요원으로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 때만 아동들과 연락이 닿곤 했었습니다.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의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느끼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뜻 깊었습니다. (중략)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주택지원의 경우 자격기준이나 지원규모의 문제로 실질적인 수혜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퇴소아동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위원 1 : 모니터링으로 아동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독립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지지체계 역할도 했죠. 또 한 가지, 만 24세 이상만 28세 미만의 고연령층도 지원사업 대상으로 포용해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올 해 지원사업에 떨어진 아동이 다음 해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만 봐도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아동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 - 조사연구를 통한 사회적 관심 촉구 및 정부정책 변화 도모

사례관리자 5 : 아동양육시설에서 살면 주거비가 없고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아프면 무료로 치료도 받을 수 있지만 시설을 나오면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높은 주거비까지 이중고가 지워지면 아이들은 살아갈 활력을 잃게 됩니다. 퇴소 후 바로 공공주택,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주거의 사각지대에 있는 퇴소아동들을 위한 롤모델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정책인 만큼 국가적인 지원사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봅니다.

### 3. 작은변화이야기

#### 지원대상자 이야기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준 덕분에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씨의 인생은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뉜다. 답답한 고시원을 벗어나 주방이 있는 나만의 공간에서 지내게 되었고,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정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고민을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났다. “막막하고 힘들 때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 앞이 보이지 않는 듯 했던 독립생활

“어렸을 때 친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친척집을 오가다 13살 때부터 아버지의 친구 분이 키워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길러주신 부모님도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만 18세가 되자마자 독립을 결심했어요. 모아 놓은 돈은 없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무작정 부딪혀 보는 수밖에요.”

가정위탁보호아동인 ○○씨는 디딤씨앗통장이나 자립정착금의 존재를 몰랐다. 무일푼 상태로 집을 나와 작은 고시원에 짐을 풀었다. 구직구인 사이트를 통해 백화점 의류판매를 시작으로 치킨집, 고깃집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꾸렸다. 한 달을 벌여 고시원 방세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식이었다.

“보증금을 모아서 답답한 고시원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빚 때문에 뜻하지 않게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이었어요. 다른 곳에서 돈을 다시 빌렸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더니 가압류까지 들어오더라고요. 혼자 감당하기에 벅찬 시간들이었어요.”

###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다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씨는 돈이 생기는 대로 빚을 갚았고 특별채무감면으로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평균 30만원씩 나가는 고시원 월세가 큰 부담이었다. 2017년 그의 사정을 딱히 여긴 지인이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서류통과 후 면접기회가 주어졌지만 업무시간을 조율하지 못해 참가할 수 없었다. ○○씨는 2018년 새로운 마음으로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문을 두드렸다. 결과는 지원대상자 선정이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제게도 통하더라고요.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간절히 원했던 나만의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싱크대, 화장실이 있는 원룸이죠. 방을 구할 때 아동자립지원단에 이것저것 많이 묻고 귀찮게 했는데 늘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는데 의지할 곳이 생기니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지지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기자 ○○씨는 용기를 냈다. 떠돌이 생활을 정리하고 집이 있는 인천 서구에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한 것이다. 이왕이면 오래 일할 수 있고, 주5일 근무로 주말에 쉴 수 있는 곳이었으면 했다. 구직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

의 주방용품 제조업체가 그의 새로운 직장이 되었다.

###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준 주거안정 지원사업

“냄비나 프라이팬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작업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예전에 악덕 매니저를 만나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근무 환경이 특별하게 느껴져요.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쉬는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더 좋고요. 얼마 전엔 정직원이 됐어요.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좋은 일만 생기는 거 같아요.”

○○씨에겐 욕심이 생겼다. 더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 보는 것이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사업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는 순수한 선의가 존재한다는 것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희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LH 전세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었거든요. 불과 1년 동안 제 삶이 너무 많이 변해 얼떨떨할 정도예요. 오래 살 수 있는 집이 생겼으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아동자립지원단에서 모니터링 오셨을 때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요. 이제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평범한 말이지만 제겐 큰 위로와 의지가 되었어요. 그 말처럼 된 것 같아 정말 행복해요.”

## 사례관리자 그룹인터뷰

###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퇴소아동을 위한 바람직한 주거사업의 롤모델”

Q)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 분의 기관담당자분을 모시고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 : 안녕하세요. 서울 명진들꽃사랑마을 김○○ 자립전담요원입니다. 명진들꽃사랑마을은 대규모 아동양육시설로 베이비박스를 통해 입소한 아기들과 미취학, 초중고생 등 약 70여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전담요원 김○○입니다.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는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조부모 양육, 친인척 양육, 일반가정 양육)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현재 약 168세대, 212명의 아동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안○○ :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기관명) 안○○ 시설장입니다. (기관명)은 그룹홈(아동공동생활가정)입니다.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숙식하며 공동생활을 하는 양육시설로

총 7명의 아이들과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Q) 각 기관별로 만 18세가 넘는 퇴소아동들의 자립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또, 독립을 위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 : 가정위탁아동이 바로 자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90% 정도가 가정에 머물며 취업이나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시설 아동보다는 주거 걱정이 덜한 편이죠. 다만, 대학입학이나 취업 등을 위해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 자립정착금 300만원(대전 지역)과 디딤씨앗통장을 활용해 주거비를 해결합니다.

자립정착금은 만 18세가 되면 나오는데 금액은 3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까지 지역과 시설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대 1로 매칭해 월 4만원 범위 내에서 동일금액을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개인차마다 적립금액이 다릅니다.

김○○ :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퇴소하도록 되어있어요. 주된 독립 자금은 서울의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개인적으로 받은 후원금 통장, 디딤씨앗통장이 주를 이루죠. 명진들꽃사랑마을에는 자체 운영하는 자립생활관과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자립형 그룹홈 두 곳이 있어 만18세 이후 최대 2년까지 머물 수 있어요. 무상 제공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독립 전에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요.

안○○ : 우리 그룹홈의 퇴소아동의 경우 지역에서 나오는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디딤씨앗통장을 독립자금으로 사용합니다. 그룹홈에는 진로 상담이나 퇴소 후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자립지원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 대형 양육시설에 비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퇴소 후 취업이나 대학입학을 하는 아동들에게 너무 멀지 않은 곳을 선택하도록 권유하곤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들 때 그룹홈을 찾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Q)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 시 사례관리대상자의 상황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김○○ : 명진들꽃사랑마을에서는 2016년에 2명, 2017년에 1명, 2018년에 2명의 아동이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았어요. 모든 퇴소 아동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라는 전제하에 사업에 대해 알려주고 신청자를 모집했지요. 18년도 지원자 한솔(가명)이의 경우 17년도 퇴소 후 채수 준비를 하면서 자립정착금과 디딤씨앗통장의 돈을 다 쓴 상황이었어요. 지인의 도움으로 보증금을 내고 월세만 부담하며 지내고 있어 주거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김○○ : 만 18세를 맞은 ○○는 대학에 입학 하면서 대리위탁가정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립정착금을 보증금으로 모두 사용한 상태라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 주었더니 선정되면 학업에 좀 더 전념할 수 있고,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다며 지원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 왔더군요.

안○○ : ○○는 현재 20대 중반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찾아와 퇴소했는데 6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전화를 걸어 3만원만 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그룹홈으로 찾아왔는데 노숙생활로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갈 곳도 마땅치 않았고요. 우선 그룹홈에 머물게 하면서 도와줄 방법을 찾던 중 주거안정 지원사업 소식을 듣고 해보자고 권했지요. ○○의 나이에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 흔치 않기 때문에 더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Q)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는 어땠는지요. 지원 금액 등은 적당했다고 보시나요?**

김○○ : 내야하는 서류가 복잡하지 않고 꼭 필요한 내용들이어서 준비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본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김○○ : 서류 통과 후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했는데 아동에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의 질실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되었고요. 500만원이라는 지원금도 적당했다고 봅니다. 보증금에 국한하지 않고 보증금과 월세, 또는 월세로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점도 유용했습니다.

**Q) 사업과정 중 진행된 주거환경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활용도는 어땠는지요.**

김○○ : 16년도 사업 초기에는 점검해야 할 모니터링 지표가 작은 책 한권 분량으로 양이 많아서 소화하기 버거운 감이 있었어요. 2018년 오리엔테이션 때 모니터링 지표가 간소화 될 거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실제로 사용할 때 받아보니 1장 짜리로 바뀌었더라고요. 꼭 살펴봐야 할 내용만 들어 있어서 체크하기도 어렵지 않고 지원사업을 떠나 퇴소아동의 주거환경 모니터링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안○○ : ○○와 함께 집을 구하러 다닐 때 모니터링 지표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유해한 환경이 없는지 부터 채광, 방음, 통풍, 대중교통, 월세, 관리비 등을 살펴보면서 여러 집을 비교했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가 혼자 집을 구하더라도 실수 없이 좋은 집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Q) 사업선정 이후 지원대상자들의 주거는 어떻게 변화했는지요. 지원대상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안○○ : 그룹홈 근처에 집을 얻고 자주 들르는데 그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수호도 고시원과 피시방을 전전하다 따뜻한 방에서 주거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소극적인 편이었는데 얼마 전에는 거주지 근처에서 일자리를 구해보고 싶다는 의욕을 보이더군요.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된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다.

김○○ : 17년도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두 친구가 신청했는데 한 명만 선정되었어요. 선정된 친구는 성취감을 느꼈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도전의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실망보다 '내가 더 노력해야 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말이죠. 무조건 주어지는 것보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16년도부터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얻은 소득이 있습니다. 월세로 지원금을 받는 아이들의 경우 매달 방세를 내고 지급영수증을 보내주면 지원금을 보내주는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자연스럽게 지불에 대한 개념, 규칙적인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독립에 있어 자기조절은 필수잖아요. 월세를 약속한 날에 맞춰내야 하고, 이를 위해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어디서든 쉽게 배울 수 없는 공부지요. 이 사업 이후에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리라 생각해요.

김○○ : ○○군은 다른 지원 사업에 떨어지고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선정된 케이스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도움이 꼭 필요한 친구가 지원을 받게 되어 담당자 입장에서도 매우 기뻐합니다. 주거안정 지원사업 중 교육을 받았는데 지원금을 짜임새 있게 사용하는 법과 LH임대주택에 관해 알 수 있어서 유용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다며 말이지요.

**Q) 마지막으로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김○○ : 다른 단체에서 주관하는 퇴소아동지원사업 있었는데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해 일정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6개월 간 나눠서 지원해 주셨어요.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다른 지원 프로그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아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있어 아이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독립을 준비할 수 있어 감사했어요. 퇴소 이후 자립정착금과 디딤씨앗통장을 모두 사용해 버린 아동의 경우 주거비나 생활비가 급할 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굉장히 유용했던 것이 자립정착금과 디딤씨앗통장 사이의 징검다리가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주거비를 해결해 디딤씨앗통장을 아끼고 퇴소아동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벌 수 있었죠. 3년간 아이들에게 따뜻한 집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했고, 제2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 : 보호가 종료된 가정위탁아동은 5년 동안 평가대상이 되는데 자립전담요원으로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 때만 아동들과 연락이 닿곤 했습니다.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의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느끼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뜻 깊었습니다.

장학금 등의 교육비 지원사업은 많지만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유일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주택지원의 경우 자격기준이나 지원규모의 문제로 실질적인 수혜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퇴소아동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 아동양육시설에서 살면 주거비가 없고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아프면 무료로 치료도 받을 수 있지만 시설을 나오면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높은 주거비까지 이중고가 지워지면 아이들은 살아갈 활력을 잃게 됩니다. 퇴소 후 바로 공공주택,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주거의 사각지대에 있는 퇴소아동들을 위한 롤모델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정책인 만큼 국가적인 지원사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봅니다.

## 심사위원 인터뷰

### “보호종료아동이 공감할 수 있어 더욱 뜻 깊은 주거안정 지원사업”

**Q)**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거안정 지원사업 심사위원으로 3년 간 활동하셨지요. 간단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심사위원 1** : 안녕하세요. ○○○입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주거안정’임을 느꼈습니다.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지원이 꼭 필요한 아동들에게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Q)** 주거안정 지원사업 심사위원 활동을 통해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심사위원 1** : 면접에서 만난 아동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동들이 처음만난 사람 앞에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민감한 사항들을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어필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압박감으로 느껴질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동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는 아동도 많았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에 대한 물음에 처한 상황이 힘들어서이기도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도와주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고마워서’라고 하는 아동도 있었습니다. 지원사업의 취지와 의미가 따뜻하게 전해졌다는 뜻이겠지요. 아동들이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는 지원사업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뿌듯했고, 보람을 느낀 순간이기도 합니다.

**Q)** 16년도부터 지금까지 보호종료아동 230여명을 만나면서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 1** : 보호체계 밖으로 나온 보호종료아동은 고립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섬에 홀로 남겨져 있는 것과 같은 막막함이죠.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그런 아동들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과 같습니다. 아동입장에서는 주거지원사업이 자신이 힘이 빠지면 결국 놓칠 수밖에 없는 동아줄이 아니라 내가 힘이 빠져도 놓지 않는 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지원금 500만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 이후에 지원사업에 선정된 아동을 만난 적이 있는데 표정부터 달라졌더군요. 주거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던 아동이 지원금을 받은 후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고시원에 살다 일반주택으로 옮기거나, 반지하에서 햇빛이 드는 1층으로 주거지를 옮기기만 했을 뿐인데 우울감이 해결되었다고 말해요.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경험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은 거겠죠.

**Q)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3년간 이어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입장에서 느낀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무엇인지요.**

**심사위원 1**: 면접을 통한 선정 시 중점적으로 생각한 건 ‘필요성’과 ‘영향력’이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어떤 어려움이 해결될 것인가?’, ‘향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심사위원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함께 진행했고, 2018년에는 면접만 봤어요. 심사위원이 서류심사 후 면접을 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소개서나 구비서류에는 보이지 않는, 도움이 간절한 아동을 탈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서류심사 부분을 아름다운 재단과 아동자립지원단에서 담당하면서 지원자들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어요. 면접심사 가이드라인도 점점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수정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타 지원사업과 다른 주거안정 지원사업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심사위원 1** : 대다수의 주거지원 사업들은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이 원하는 생활권이나 주거의 형태와는 거리가 멀어요. 교통이 불편한 변두리에 위치해 있거나 낯선 이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아동들의 호응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아동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월세를 가리지 않고 지원금 한도 내에서 아동들이 원하는 곳에 살 수 있게 했어요. 모니터링으로 아동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독립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지지체계 역할도 했죠. 또한 가지, 만 24세 이상 만 28세 미만의 고연령층도 지원사업 대상으로 포용해서 자립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올 해 지원사업에 떨어진 아동이 다음 해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만 봐도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아동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Q) 마지막으로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심사위원 1 :** 사업이 끝난 뒤에도 아동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비, 자기개발비, 주거지원비 어떤 지원사업이든 도와주고 끝나는 게 아닌, 자립을 돕는 지지체계로 남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사업을 계기로 온전히 독립하는 아동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겁니다. 단순한 현물지원이 아닌 인생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아동자립지원단의 바람개비서포터즈처럼 보호종료아동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장치들이 더 많아 졌으면 합니다.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면 모든 아동들이 행복한 가정에 자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민간에서 주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아동은 존중받고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뜻을 함께 하는 이들이 힘을 더한다면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이 오리라는 희망도 엿보았습니다. 3년 간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이끌어 온 아름다운재단과 아동자립지원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 토론문 1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유원선 사무국장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은 (사)들꽃청소년세상과 함께 2011년부터 8년째 거리에서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만나는 EXIT 버스를 운영해왔습니다. 거리에서 새벽까지 탈가정한 청소년들을 만나고 기존의 서비스와 연계하는 일을 해왔으나 상당부분의 청소년들은 기존 서비스(시설, 유관기관)에서 거부당하고 본인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대로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청년이 되어도 그 삶이 나아지지 않아서 18-24세 청소년들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인 [자립팜 이상한 나라]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형태는 크게 2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보호 아동” 중심의 정책을, 여가부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진행하여 전자는 양육시설, 그룹홈, 위탁가정 등으로 후자는 일시, 단기, 중장기 쉼터 등으로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부모의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체가정-보통 부모가 판단하거나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된 경우)되어 18세까지 정부가 아동을 보호하고 이후 자립을 지원합니다.(자립정착금, 자립관 등) 반면 여가부는 “가출한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고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자립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복지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족합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탈가정하면 여가부로, 신고되어 분리되면 복지부로 가는 아이러니, 부모가 못키우겠다고 자녀 양육을 포기하며 복지부로, 방임해도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아 참지 못한 자녀가 탈가정 하게 되면 여가부 혹은 거리로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제에서 보는바와 같이 복지부 요보호 아동에 대한 자립도 미흡하지만 여가부 “가출한 아동”에 대한 자립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자립지원금이나 LH 입주자격 등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복지부, 여가부 어디로도 가지 않는 청소년들이 거리에 있습니다. 이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앞으로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가정 내에서의 갈등<sup>1)</sup>으로 거리에 나왔는데 쉼터에 가면 가출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에 연락이 가거나, 규율이 너무 심해서 답답해서 본인이 거부하거나, 범죄경력이 있거나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의 경우 시설에서 거부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거리의 청소년들은 시설을 들어가

1) 청소년 가출이유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 7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 DB

지 않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룹홈이나 양육시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입소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만으로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거리에서 청소년들은 당장의 잘못, 생계를 위해 범죄나 성매매 등에 쉽게 노출되고 이러한 범죄 경력은 다시 또 이들의 자립에 방해요소가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거리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활동가들은 청소년들에게 닥친 위기 상황에 대안을 제시해줄 수 없는 막막함에 접하게 됩니다. 가정도 시설도 가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범죄나 위험한 상황 외에 어디로 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희망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단순히 그들 개인의 잘못일까요? 그러한 답답함을 가지고 위기상황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현장의 네트워크 모임이 “자몽”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자립이란 무얼 의미하는지? 청소년들에게 심리정서적 지원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청소년들에게 기본소득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러한 내용들을 현장과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한지 올해로 5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몽 네트워크의 고민 끝에 올해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제목 그대로 청소년의 “주거권”을 고민합니다. 청소년이 가정에서 더이상 안전하지 않을 때 그들이 갈 곳은 정말 “시설”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현경 위원님의 발제문의 마지막 “시설보호 중심의 현재구조에 대한 획기적 변화”에 대한 제언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청소년에게 “가정 외에는 시설”이 아닌 다양한 선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에서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탈가정 청소년을 “홈리스”로 규정하고 “Housing First” 정책을 청소년에게도 적용합니다.<sup>2)</sup> 우선적으로 청소년이 원하는 컨디션의 주거를 먼저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 주거는 기존 살고 있던 지역사회 내의 host home일 수도 있고, 독립 주거일수도, 공공 주거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인 등을 위해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주택의 대상에 청소년도 포함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자립팜 이상한나라]는 청소년기를 거리에서 보낸 청소년 청소년들이 18세 이상이 되어도 불안정한 주거, 일자리, 건강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심각해지는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 몇 명의 문제라도 해결해보고자 5명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였고 5년 넘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최대 2년 동안 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집에서 출국<sup>3)</sup>한 20여명의 청(소)년들이 쉽지는 않지만 자립하여 지내고 있고 이들을 지속

2) 한국의 경우 노숙자를 18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노숙정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시설의 입퇴소가 아닌 [이상한나라]의 입출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 집은 규칙이나 제재가 없이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공동의 주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 안에서는 많은 싸움과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5명이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닌 독립된 주거공간을 절실히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의 바램은 [이상한 나라]와 같은 대안적 주거공간이 많이 마련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이 다양한 지역사회 안에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한국의 청소년 자립정책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미성숙=독립불가’의 프레임으로 어떠한 독립적인 권리(임대차계약 불가능, 독립적 수급 자격 불가 등)도 허락하지 않다가 18세가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혼자 알아서 살라고 내동댕이치는 형국입니다. 다양한 청소년들을 “시설, 관리, 요보호”라는 일괄된 프레임에 가둘 수 없습니다. 18세가 넘어섰다고 선을 굿듯이 혼자서 알아서 살라고 하는 자립으로 내몰 수도 없습니다. “함께 서는 자립”으로 다양한 대안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고민할 때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건강한 자립에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열여덟 어른 입니다

## '열여덟, 보육원을 나오던 순간'

만 18세, 보육원을 나와 자립정착금 500만원으로 자립해야 하는 열여덟 어른  
매년 2,500명의 열여덟 어른들이 세상에 나오지만,  
이들의 자립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무관심'에 가깝습니다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닌 고립입니다.

세상의 편견 앞에 제각각 살아내고 있는  
열여덟 어른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나 보다 평범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열여덟 어른의 자립을 응원해 주세요!!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 참여하기  
Tel. 02-766-1004 | Web. [www.beautifulfund.org](http://www.beautifulfund.org)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 열여덟 어른의 목소리를 담은 프로젝트

"우리는 편견과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꿈을 찾고 있는 보통의 청소년입니다."

이제 곧 시설 밖을 나올 아이들이  
평범하게 자립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각각의 꿈과 재능을 담은 당사자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신선 프로젝트**  
# 당사자 인터뷰

'자립전문가'를 꿈꾸는 신선님이 열여덟 어른들을 직접 만납니다. 이들이 자립하면서 겪었던 사회 편견부터 정책의 문제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당사자의 시선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김준형 프로젝트**  
# 김군자 블렌드 편딩

'위안부' 피해자 故김군자 할머니의 장학금을 받은 김준형님이 할머니를 추억하며 '김군자 블렌드'를 만들었습니다. '김군자 블렌드'는 텀블벅에서 성공리에 편딩이 진행되었습니다.



**박도령 프로젝트**  
# 연극 '바깥세상'

연극배우 박도령 님이 자신이 경험했던 보육원 이야기를 주제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담긴 연극을 통해 보호종료될 앞둔 아이들의 이야기를 알리고자 합니다.



**전안수 프로젝트**  
# 굿즈 디자인

디자이너 전안수 님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디자인 굿즈를 만듭니다. 보육원 '원'을 모티브로 한 굿즈는 해피빈 공감편딩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열여덟 어른> 캠페인을 통해 기부하신 기부금은 '교육영역기금'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사용됩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가능성을 지원합니다!

|                                |             |                      |         |
|--------------------------------|-------------|----------------------|---------|
| 1인 연간 400만원<br>학비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             | 자립 역량강화 및<br>지지체계 형성 |         |
|                                |             |                      |         |
| 교육비 지원                         | 학업 생활보조비 지원 | 자치활동 지원              | 상담 모니터링 |

아름다운재단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만 18세에 아동복지시설(보육원),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2019 누적 830명(연 60명), 약 39억원 교육비지원  
2014 자립정착금 사용 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사업진행